

2014년 3월5일 수요일 함거라

콘스타 관련 입지 및 금융정책 총책임자

시기	사건	공용정책 총책임자
2003년 9월	본사, 외환은행 인수	이정재
2007년 3월	김영연에 경제개혁연대 본사 타의 산업자산 매각 의혹 제기	윤용현
11월	윤용현, 공용정책위원단 김 영유원장 "본사" 적격성 재 다음달에 검토	김영덕

본지는 피자험플루스는 일본 승사에 상장된
회사였다는 사실이다. 전상인 홍익대 교수(경
제대)는 "피자험은 2005년에 상장된 기업이다.
이 회사의 자산 내역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공개돼 있는 상한이었다"고 말한다. 실제
위가 콘스탄의 성격에 대한 판단
원의 도보사부출
내역은 도보사부출

2014년 3월 1일 토요일 **경향신문**

론스타 '산업자본' 자인했는데도
금융위, 별다른 조치 안 취했다
민변 등 정부문건 첫 공개

최종구 당시 금융위 상임위원
(론스타펀드4호)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최종구 당시 금융위 상임위원
(론스타펀드4호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론스타 부적격, 당국서 묵인"

-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관련 2차 정보공개자료의 의미와 쟁점 -

- 일 시 2014년 3월 17일(월) 오전 10시~12시
- 장 소 국회 의원회관 2층 제9 간담회실
- 주 최 이종걸 의원, 민병두 의원, 김기준 의원(민주당), 박원석 의원(정의당)
- 주 관 론스타공동대책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론스타 산업자본 자인과 금융위원회의 론스타 봐주기 왜 문제인가?!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관련 2차 정보공개자료의 의미와 쟁점—

- **일 시** : 2014년 3월 17일(월) 오전 10시~12시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2층 제9 간담회실
- **주 최** : 이종걸 의원, 민병두 의원, 김기준 의원(민주당),
박원석 의원(정의당)
- **주 관** : 론스타공동대책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제 및 패널

1. **사회** : 박원석 국회의원 (정의당)
2. **발제** : 1. 전성인 교수 (홍익대 경제학과)
2. 권영국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3. 패널

- 김행선 미국 변호사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득의 집행위원장 (론스타공대위,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 토론회 취지

- 2013년 12월 30일 대법원은 외환은행우리사주조합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심사자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자료(이하 “제2차 정보공개자료”라 함)는 지난 2월 20일 공개되었다. 제2차 정보공개자료를 분석한 결과 론스타가 일본의 호텔과 골프장 자료를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했고,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지배 자격이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번에 확인되었다.
- 제2차 정보공개 자료는 론스타가 2007년 7월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 모든 론스타 펀드가 론스타의 동일인이며, ▲일본에 비금융회사에 해당하는 호텔, 골프장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2008년 9월 제출한 서류를 통해 이들 ▲해외 비금융회사의 자산 합계가 2조원을 초과한다는 내용의 자료도 제출하였다. 즉 스스로 비금융주력자인 산업자본임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그 후 대주주 적격성 심사나 주식처분명령 등 어떤 합당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11년 3월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리고 론스타의 한국철수를 허용했다.
-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인 론스타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노골적인 봐주기가 이번 정보공개 자료로 백일하에 드러났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은 아직까지 론스타 봐주기에 대한 공식 입장발표는 없었고, 언론의 취재에 대해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ISD)이 진행되고 있어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는 요지의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금융감독당국이 자신들의 불리함과 불법행위에 대해 ISD라는 론스타와의 소송을 앞세우고 그 뒤에 숨고 있는 것이다.
- 론스타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이후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통해 4조6,000억 원의 시민들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될 지도 모르는 위기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더 중요하게는 금융과 산업의 분리라는 은행법의 규범력을 재확인하고, 이를 유린한 론스타와 금융관료들의 책임을 엄히 묻어 금융의 공공성을 지

켜야 하는 싸움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 지난 2011년 3월 16일 일본 골프장과 호텔 등 론스타가 보유하고 있던 비금융회사를 모두 누락시킨 채 그동안 중단했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3년 반 만에 재개하여 론스타에게 면죄부를 준 지 3주년에 즈음하여 ‘론스타 대주주적격성 심사 2차 정보공개자료의 의미와 쟁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 이번 토론회에서 론스타 2차 정보공개 자료의 의미와 쟁점들을 살펴보고, 론스타 봐주기를 주도한 금융관료들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위법행위의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이번 공개자료가 기청구한 헌법소원과 투자자·국가소송(ISD)에 미치는 영향 및 중재요건 절차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론스타의 불법행위와 금융당국의 묵인, 방조가 만들어낸 ‘론스타 게이트’의 실체가 이번에 드러난 만큼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론스타 게이트’ 관련 책임자 형사 고발, 국정조사 추진 등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다시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 목 차 ■

인사말

국회의원 김 기 준 (민주당)	9
국회의원 박 원 석 (정의당)	11
국회의원 민 병 두 (민주당)	13

발제문

론스타 대주주적격성 심사 관련 제2차 정보공개자료의 의미와 쟁점	15
전성인 교수 (홍익대 경제학과)	
금융위원회는 ‘브로커’조직인가, 범죄조직인가?	61
권영국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토론문

론스타 적격성 심사가 ISD에 미치는 영향 및 중재요건과 절차	73
김행선 미국 변호사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신규 증거가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주대표소송에 미치는 영향	87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론스타 대주주적격성 관련 정보공개 자료가 론스타 관련 헌법소원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93
김득의 집행위원장 (론스타공대위,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인 사 말



국회의원 김 기 준
(민주당)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지 벌써 10년이 지났고 외환은행을 다시 하나금융지주에 팔아먹고 해외로 나간지도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론스타가 우리나라 금융계에 찍어 놓은 어지러운 발자국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참담하기만 합니다.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등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휘젓고 다니면서 벌인 범법행위도 모자라서 지금은 우리 정부를 상대로 4조 6천억 원대의 ISD 소송(투자자·국가간 소송)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에 들어가는 돈은 모두 우리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론스타의 만행은 외환은행의 불법 인수뿐만이 아닙니다. 론스타는 외환위기 직후 우리나라의 부실채권 시장과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막대한 돈을 벌었습니다. 론스타는 해외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이익을 극대화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론스타는 유령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주식 형태로 거래하면서 한국 등 각국의 투자혜택을 이용, 조세를 회피하고 차익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융당국은 첨단금융기법 운운하면서 론스타 감싸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수조 원의 국부가 유출될 때도 그랬고 또 다시 수조 원의 세금이 나가야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단 한 차례도 론스타의 문제점을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던 차에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던 금융당국의 주장과 행동의 원인으로 보이는 자료들이 이번에 공개됐습니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개된 “론스타의 대주주 심사에 관

한 정보자료”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금융당국은 론스타에게 단순히 휘둘린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오던 론스타의 외환은행의 대주주로서의 부적격성을 사전에 이미 모두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이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해 왔습니다. 은행법은 동일인 전체자산 중 ‘비금융주력’ 자산의 규모가 2조원 이상이 되는 주주는 은행 주식의 4% 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론스타가 금융당국에 제출한 서류에서 스스로 비금융주력 자산이 2조원 이상이라고 자인을 했는데도 금융당국은 무슨 이유에선지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고 ‘비금융주력자’라는 판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금융당국은 명확한 해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ISD소송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명분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처음부터 론스타와 한 통속이었다는 의혹은 반드시 규명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도 손발이 맞아 서로 퍼주고 챙기는 사이였다면 이번 ISD 소송에서도 서로 퍼주고 챙기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대해 금융당국은 명확한 소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론스타와 금융당국이 처음부터 환상의 복식조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밖에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모이신 여러 주체들이 힘을 합쳐주신다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국회에서 적극 나설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3월 17일
국회의원 김 기 준

인사말 2

인 사 말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 박 원 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박원석 의원입니다.

론스타 사태는 소위 모피아라 불리는 금융관료가 낳고 키운 문제입니다.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련 2차 정보공개 자료의 핵심적 의미는 바로 이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비싼 수업료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얼마의 수업료를 더 지불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사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금융관료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전히 론스타 사태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넘기는 것이 관련법 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시행한 당사자 중 하나인 당시 추경호 금융정책과장은 이제 재정부 차관이 되어 론스타가 제기한 ISD관련 소송의 정부 TF팀 구성원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책임은 커녕, 여전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책임이 있는 금융관료 중 그 누구도 마땅한 책임을 진 바 없습니다. 이러한 금융관료의 이기주의와 권력행사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은 어제 오늘 지적된 것이 아닙니다. 론스타는 떠났지만 그 흔적은 여전히 고통스럽게 남아 금융관료가 우리 국민들에게 남긴 폐해를 압축적으로 전

달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을 기만하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존재이유인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기를 서슴치 않는 금융관료 집단은 이제 해체 되어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단지 론스타 사태의 지난 사실 들을 회상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를 추억하고 있을 만큼 한가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기주의와 부당한 권력의지의 집합체인 모피아의 청산을 결의하는 자리입니다. 모피아의 전면적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이렇듯 의미 있는 토론회를 함께 할 수 있게 애써주신 민주당 이종걸 의원님, 민병두 의원님, 김기준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늘 론스타 사태의 선두에 계시는 발제자 전성인 교수님과 권영국 변호사님, 그리고 토론자 분들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4년 3월 17일

국회의원 박 원 석

인사말 3

론스타 사건의 교훈은 ‘금융위원회 개혁’의 필요성입니다.



국회의원 민 병 두
(민주당)

론스타 사건의 교훈은 금융위원회 개혁의 필요성입니다. 론스타가 비(非)금융주력자(산업자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잘못된 정책 결정을 했습니다.

론스타 사건에서 보여지는 금융위원회의 잘못된 행태는 금융산업을 담당하는 ‘정책’ 기관과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감독’ 기관이 분리되어야 하는 정책-감독 분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금융소비자위원회(금소위)와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을 둘러싼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된’ 금융소비자위원회의 신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독립성이 보장되는, 제대로 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원(금소원)만 만들고, 금소위 설립에 대해서는 반

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 정책도 모피아, 감독도 모피아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건전성 감독도 모피아, 금융소비자 감독도 모피아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독립성은 훼손되고, 사실상 ‘모피아’(재무부+마피아)의 권한은 더욱 강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론스타 사건을 계기로, ‘금융위로부터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필요성이 재환기되는 토론회가 되길 바랍니다.

2014년 3월 17일
국회의원 민 병 두

발 제 문

론스타 대주주적격성 심사 관련
제2차 정보공개자료의 의미와 쟁점

.....

전 성 인 교수 (홍익대 경제학과)

론스타 대주주적격성 심사 관련 제2차 정보공개자료의 의미와 쟁점

전 성 인 교수
(홍익대 경제학과)

<요 약>

- ☐ 론스타의 숨겨진 투자자 일부 노출
 - Lone Star Fund IV(US) LP: 미국 유명 대학, 공무원 퇴직 연금 등
 - LSF IVB Korea II, LP: 캐나다 퀘벡주 연금(Cadfund, LP)
 - 나머지 5개 펀드의 재무적 투자자 구성 형태 노출
- ☐ 일본 골프장 등 비금융회사의 노출 과정 추적 경과
 - 2007. 7. 10. 제출 자료에서의 일본 비금융회사 관련 정보
 - 2008. 9. 9. 제출 자료에서의 일본 비금융회사 자산 내역
 - 2008. 12. 24. 제출 자료의 번복 논리와 그 허구성
 - 2011. 3. 16. 적격성 심사의 위법성 및 그 이후 감독당국 입장 추이
- ☐ 해결된 논점
 - 론스타 펀드들은 모두 동일인 (론스타 스스로 인정)
 - 론스타는 진실로 외환은행 인수 이전부터 탈출시까지 비금융주력자
 - 금융감독위원회의 담당자들은 이르면 2007. 7. 10. 이후, 늦어도 2008. 9. 9. 이후에는 론스타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였음을 인지
- ☐ 의문
 - (의문 1) 2003년 당시 과연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일본의 골프장 등 비금융회사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인가?
 - (의문 2) 금융위원회는 왜 어렵게 일본 골프장과 호텔 등 비금융회사 자료를 받아낸 후,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 (의문 3) 2011. 3. 16. 의 면죄부 발급을 전후하여 금융위 관료를 제외한 다른 금융위원회 위원은 어디까지 알고 있었을까?

1. 제2차 정보공개의 배경

□ 2007. 3월부터 7월까지의 상황

- 2007. 3. 27. 참여연대 및 경제개혁연대가 론스타의 은행법 위반(비금융주력자 해당) 가능성 최초 제기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질의서 송부
 - * 그동안 정부는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 긴급한 경우에는 대주주 적격성이 일부 미흡한 경우라도 은행인수 승인이 예외적으로 가능(소위 “예외 승인”)하다고 하면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의 적법성을 주장
 - * 그러나 시민단체의 주장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면 예외 승인도 불가능하다”는 것
 -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7. 5.의 회신을 통해 “산업자본이라면 예외 승인도 불가능하다”는 점과, “론스타에게도 이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후, “론스타에 대해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았음”을 인수 승인의 근거로 제시
- 2007. 3. 29. 참여연대 및 경제개혁연대는 한국외환은행 정기 주주총회에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가능성 질의
- 2007. 6. 12.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한국외환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착수

□ 2007. 8월부터 2010. 10월까지의 상황

- 2007. 9.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 “금산분리 완화 반대”
- 2007. 11월말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회견에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 다음달 짚 결론” 발언
 - * 그러나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결과는 그 이후 전혀 발표되지 않고 있다가, 아래에서 보듯이 2011. 3. 16.에 오랜 공백을 깨고 처음으로 공개
- 2010. 11. 25. 하나금융지주의 김승유 회장은 미국에서 론스타의 존 그 레이켄 회장과 한국외환은행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

□ 2011. 3. 16일자 론스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적격성 심사 결과 발표

- 2011. 1. 6. 김석동 금융위원장 취임
- 2011. 3. 16.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 발표
 - * 론스타에 대해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한 결과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고 발표

* 론스타가 제시한 자료에만 근거한 판단이라고 명시

□ 2011. 3. 17일부터 현재까지의 상황

- 2011. 5. 25. 론스타가 일본에 수조원대 골프장을 가지고 있어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KBS가 특종 보도
- 2011. 12. 론스타가 골프장을 제3자에게 매각
- 2011. 12. 26.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국회에서 비금융주력자 심사 보고
 - * “비금융주력자 요건에 해당”했으나 비금융주력자는 아니다.
 - * 특히 일본의 골프장은 매각했으므로 더 이상 문제는 없다.
- 2012. 1. 27. 금융위원회는 하나금융지주의 한국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

□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결과에 대한 제2차 정보공개

- 2013. 12. 대법원 확정 판결
 - * 정부는 “ISD 소송 진행중” 등 다양한 변명을 제시했으나 대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하므로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
- 2014. 2. 20. 제2차 정보공개 자료 수령
 - * 제1차 정보공개 때와는 달리 확정 판결후 약 한달 반만에 자료 공개
 - * 제1차 정보공개 (경제개혁연대 소송에 의해 론스타 인수 당시부터 2006년 6월말까지의 심사 자료 공개) 때에는 확정 판결후 약 2주일 만에 공개
- 2014. 2. 28. 제2차 정보공개 자료의 핵심 내용에 대한 기자회견
 - * 론스타는 일본에 골프장, 호텔 등 비금융회사 보유중이고 자산 합계는 2조원 상회
 - * 금융위는 이 사실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11. 3. 16.에 일본 골프장 등 비금융회사 전부 누락시킨 자료에 근거하여 면죄부 발급

2. 공개 내용 분석 I: 론스타의 숨겨진 투자자 일부 노출

- 제2차 정보공개자료에 의해 그동안 베일에 쌓여 왔던 론스타의 투자자 일부가 세상에 노출됨
-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 밝혀 낸 론스타의 투자자들은 모두 진실로 판명됨

○ 스탠포드 대학이나 캐나다 퀘벡주 연기금의 투자 사실 확인

- * 시민단체들은 스탠포드 대학이 중요한 숨겨진 투자자이며,
- * 따라서 스탠포드 대학 이사를 역임하고 스탠포드 대학이 투자한 자회사의 대표인 래리 S. 오웬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므로 외환은행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었음
- *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2011. 6. 14. 국회 정무위에서 미국 스탠포드 대학, 영국 ABN 암로, 캐나다 퀘벡주 연기금의 투자의혹을 제기
- => 이번 제2차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스탠포드 대학 및 캐나다 퀘벡주 연기금의 투자 사실 확인됨
- => 네덜란드 ABN 암로의 투자 사실도 “거의” 확인 단계

○ 나머지 투자자가 존재할 수 있는 “마지막 은신처” 몇 개 펀드로 압축

- *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한 총 7개의 주요 재무적 투자 단위중 2개의 투자자 내역은 공개
- * 나머지 5개 투자 단위중 2개는 간접적으로 투자자의 정체가 유추 가능한 상황
- * 따라서 나머지 3개의 투자 단위의 투자자 내역을 밝히면 투자자들의 전모는 어느 정도 밝혀질 듯

□ Lone Star Fund IV(US) LP의 38개 재무적 투자자 내역 공개

- 2007. 7. 10. 론스타가 금감위에 제출한 회계감사보고서에 수록
- Lone Star Fund IV(US) LP는 1개의 GP(무한책임사원)와 38개의 LP(재무적 투자자,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
- 38개 재무적 투자자의 내역은 권말의 제출자료 사본 참조.
- * 대학 관련 연기금: 스탠포드, MIT, 컬럼비아, 노트르담, 루이스빌 신학대학 등
- * 교사 및 공무원 퇴직 연금: 워싱턴주, 오레곤주, 위스콘신 주 공무원 연금, 휴스턴 및 델러스 경찰 및 소방대원 연기금, 뉴욕주 교사 연금, 캘리포니아 주 교사 연금
- * 기타: 미술 갤러리, 병원 기금 등

□ LSF IVB Korea II, LP의 유일한 투자자: 캐나다 퀘벡주 연기금

- 2003년 “투자자 바뀌치기”에 의해 감독당국의 승인 후에 새로 참여한 투자 법인 중 하나
- * 이 투자자 바뀌치기에 의해 동일인 변경되었으나 변경된 동일인에 대한 외환은행 인수 승인은 없었음.
- * 이 점은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감독당국의 승인없이 이루어진 무효임을 확인해 주는 추가적 증거였음

○ LSF IVB Korea II, LP는 1개의 GP와 1개의 LP로 구성

- * 권말의 공개자료 사본 참조
- * 설립연월일은 외환은행 인수 승인(2003. 9. 26.) 이후인 2003. 10. 20.

○ 1개의 LP는 캐나다 퀘벡주 연기금의 자회사인 Cadfund로 확인됨

- * 권말의 공개자료 사본 참조
- * 2006년말 현재 약 7억 달러 상당의 투자잔액 보유

□ 다른 투자 단위의 경우 재무적 투자자의 숫자 정도만 노출

○ LSF IVB Korea I, LP는 1 GP + 1 LP

- * 투자자 바뀌치기에 의해 새로 추가된 법인
- *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자금 원천에 대하여 많은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 그 법인

○ KEB Investors, LP는 1 GP + 1 LP

- * 당초 승인 신청시부터 존재했던 투자자
- * 설립 연월일은 2003. 9. 3.
- * 네덜란드의 금융회사인 ABN 암로 일 가능성 매우 큼

○ KEB Investors II, LP는 1 GP + 4 LP

- * 투자자 바뀌치기에 의해 새로 추가된 법인
- * 설립 연월일은 2003. 9. 24. (따라서 론스타는 감독당국의 승인 시점인 2003. 9. 26. 이전부터 이미 투자자 바뀌치기를 획책하고 이 회사를 설립하는 등 바뀌치기를 추진)
- * 스탠포드 대학의 연차 재정보고서에 의하면 스탠포드 대학은 이 회사의 대주주 (따라서 스탠포드 대학은 비단 Lone Star Fund IV(US) LP를 통해서만 인수 자금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이 회사를 통해 추가 자금을 투하 => 스탠포드 대학의 특수관계인인 래리 S. 오웬이 사외이사로 재직하게 된 배경)
- * 스탠포드 대학 이외에 나머지 3개 LP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

○ KEB Investors III, LP는 1 GP + 1 LP

- * 투자자 바뀌치기에 의해 새로 추가된 법인
- * 설립 연월일은 2003. 10. 10.
- * 유일한 재무적 투자자의 정체는 몇 가지 미확인 추측만 존재할 뿐 확인되지 않은 상태

○ KEB Investors IV, LP는 1 GP + 1 LP

- * 투자자 바뀌치기에 의해 새로 추가된 법인
- * 설립 연월일은 2003. 10. 20. (가장 마지막에 설립된 법인)
- * 유일한 재무적 투자자의 정체는 몇 가지 미확인 추측만 존재할 뿐 확인되지 않은 상태

○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 1>과 같음

<표 1> 외환은행을 인수한 주요 투자 단위의 구성 내역과 투자자 정제

투자법인 명	설립 시기	투자자 바뀌치기	GP	LP	LP의 정체	비고
Lone Star Fund IV (US) LP	2001. 12. 12.	당초	Lone Star Partners IV, LP	38	대학연금, 공무원 연기금 병원 기금 등	Lone Star Fund IV (Bermuda) LP 와 투자자 및 투자전략 공유
LSF Korea I, LP	(2003. 10. 20)*	바뀌치기	(상동)*	1	미상	2003. 10. 29. 투자자 바뀌치기 사후 보고서 기준
LSF Korea II, LP	2003. 10. 20.	바뀌치기	상동	1	Cadfund	캐나다 퀘벡주 연기금은 우리나라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KEB Investors, LP	2003. 9. 3.	당초	상동	1	ABN 알로*	추정
KEB Investors II, LP	2003. 9. 24.	바뀌치기	상동	4	스텐포드 대학 이 대주주, 3개 LP 미상	스텐포드 대학은 이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로 공시
KEB Investors III, LP	2003. 10. 10	바뀌치기	상동	1	미상	투자자 바뀌치기 신고에 따를 투자구조도에 의하면 Lone Star
KEB Investors IV, LP	2003. 10. 20.	바뀌치기	상동	1	미상	Global Holdings, Ltd가 유일한 LP로 참여

3. 공개내용 분석 II: Lone Star Fund IV (U.S.) L.P.에서 자인한 내용

□ 론스타는 2007. 7. 10일 제출한 대주주 적격성의 추가 보완자료에서 다음 사항을 스스로 시인

○ 추가 보완자료에는 Lone Star Fund IV (US) L.P.의 재무제표의 주석 (notes to Financial Statements)이 포함되어 있었음

* 이 재무제표는 론스타의 회계법인이 론스타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2006년말 현재의 재무 상황을 보고한 자료로 2007. 1. 15일자로 작성되었음

○ 시인 사실 1: 론스타 펀드 1호부터 5호까지는 모두 동일인이다!

* The general partner of LSOF(제1호 펀드),, are under common control.

○ 시인 사실 2: 론스타 펀드는 일본에 자회사로 호텔, 골프장 등을 가지고 있다!

* Solare Hotels and Resorts, K.K. ("**Solare**"): 론스타가 소유한 다양한 호텔의 관리회사

* Pacific Golf Management, K.K. ("**PGM**"): 론스타가 소유한 다양한 골프장의 관리회사

=> 론스타 스스로 모든 론스타 펀드가 동일한 지배하에 있고(즉 우리나라 은행법의 기준으로 "**동일인**"이고), 이 동일인은 일본에 호텔과 골프장을 가지고 있다고 투자자에게 보고함으로써 위 사실을 시인

4. 공개내용 분석 III: 론스타가 금융위에 제출한 해외 비금융주력자

□ 론스타는 론스타 펀드 IV 특수관계인의 해외투자 사실 등에 관한 자료를 2008. 9. 9일자(접수일 기준)로 금융위원회에 제출

○ 론스타의 해외 특수관계인 현황을 제출하라는 금융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해외 특수관계인 현황을 제출하고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표기

○ 이 보고서에 호텔(Solare), 골프장(PGM) 및 아수(雅秀, Gashu) 엔터프라이즈 등 그동안에 시민단체의 노력에 의해 밝혀졌던 일본내 비금융 계열회사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그 자산액이 명기되어 있음.

<표 2> 2006.12.31. 현재 론스타의 일본내 주요 비금융 계열회사 현황

모회사	일본내 비금융 자회사	자산총액 (백만엔)	자산총액 (백만원)*
LSF Continental Holdings SCA	Ninomiya Co, Ltd	2,070	16,184
	Pacific Golf Group	224,017	1,751,432
	International Holdings KK		
LSF EA Holdings SCA	Gashu Enterprise Co, Ltd.	121,272	948,141
LSF SHR Holdings SCA	Solare Hotels and Resorts K.K.	17,112	133,787
일본내 비금융 계열회사 자산 합계		364,471	2,849,544

*: 1¥= 7.8183 원 (2006. 12. 29 기준환율)

○ 이 자료에 의하면 론스타는 일본내 비금융 계열회사의 자산 합계가 약 2조 8,500억원 가량이었고, 여기에 극동건설 등 국내 비금융 계열회사의 자산을 추가하면, 비금융회사의 자산합계는 총 3조 4천억원에 달함

* 극동건설 등 국내 비금융 계열회사 자산 합계(론스타 신고) = 582,147 (백만원)

* 한국과 일본내 비금융 계열회사 자산 합계 (론스타 신고) = 3,431,691 (백만원) (✓)

=> 론스타는 스스로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자료에 의할 때 2006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은행법에 의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

- * 동일인종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산 합계가 2조원을 초과.
- * 론스타는 나중에 지주회사는 기타 투자기관으로 분류되므로 PGM을 제외시켰으나, 이 주장은 법원에 의해 이미 기각된 바 있음. (이에 관해서는 권영국 변호사님의 발제문 참조)

5. 공개내용 분석 IV: 금융위는 이를 은폐하고 2011.3.16. “적격” 결론

- 론스타는 2010.12.24.에 한꺼번에 7개 반기별 대주주 적격성 자료를 제출
 - 마지막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일인 2008.12.24. 이후 만 2년 동안은 자료의 공백기
 - * 진동수 금융위원장(2009.1. ~ 2011.1.)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2010.12.24.에 갑자기 7개 반기별 자료 한꺼번에 제출
 - * 2007년 6월말 현재 자료 ~ 2010년 6월말 현재 자료
 - 금융위원회는 이 자료에 근거하여 2011.3.16.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관한 심사를 재개하고, 론스타에 면죄부를 줌
 - * 김석동 금융위원장(2011.1. ~ 2013.2.)는 취임 직후 상황.
 - * 금융위원회는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와 증거만으로는”, 2010년 6월말 현재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 * 금융감독원은 “론스타펀드IV가 제출한 최종자료에 따르면” “비금융회사 비중은” “자산 기준으로 1.7조원”으로서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그러나 일본의 골프장만 계산해도 2010년말 현재 자산가치는 2.82조원이었음
 - * 2011. 12. 26.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의 국회 정무위 보고 문건
 - * PGM에 대해서만 조사한 후 조사 결과를 공개한 자료
 - * 2010년말 현재 PGM의 100% 자회사중 3개 비금융 자회사의 자산가치 합계 2.82조원
 - * 2009년말 현재 PGM의 4개 자회사의 자산가치 합계는 3.33조원이었음

6. 해결된 논점과 남은 의문

□ 해결된 논점

- 론스타 펀드들은 모두 동일인 (론스타 스스로 인정)
- 론스타는 진실로 외환은행 인수 이전부터 탈출시까지 비금융주력자
- 금융감독위원회의 담당자들은 이르면 2007. 7. 10. 이후, 늦어도 2008. 9. 9. 이후에는 론스타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였음을 인지

□ 남은 의문

- (의문 1) 2003년 당시 과연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일본의 골프장 등 비금융회사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인가?
- (의문 2) 금융위원회는 왜 어렵게 일본 골프장과 호텔 등 비금융회사 자료를 받아낸 후,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 (의문 3) 2011. 3. 16. 의 면죄부 발급을 전후하여 금융위 관료를 제외한 다른 금융위원회 위원은 어디까지 알고 있었을까?

- (의문 1) 2003년 당시 과연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일본의 골프장 등 비금융회사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인가?
-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비금융주력자일 경우 예외승인도 불가능하다는 법리는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음
 - * 2002년 은행법 개정에 의해 비금융주력자 조항 도입
 - * 당시 은행법 개정을 주도했던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은 주형환 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주 비서관은 2003. 7. 15. 소위 “10인 대책회의”에 청와대 행정관 자격으로 참여 => 따라서 산업자본이면 예외승인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전달했을 가능성
 - * 2003. 7. 23. 추경호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은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서면 보고를 통해 예외승인을 위한 조건 중에 “산업자본의 과도한 은행지배 방지”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보고
 - * 2003. 9. 5. 동아일보 기사에 대한 반론으로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자료(현재 삭제됨)에는 산업자본이면 은행 인수가 불가능하고 이 규정은 외국인에도 예외없이 적용됨을 명기
 - * 2003년 인수 이전, 금융감독원의 진홍수 수석조사역(작고), 법무법인 세종의 법률자문 보고서(송웅순 외)도 이런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음

- 따라서 만일 재정경제부나 금융감독위원회가 2003년 인수 시점에 론스타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다면 2007. 7. ~ 2008. 12. 까지 1년 반 동안 끈질기게 론스타로부터 해외 비금융 계열회사 내역을 제출하도록 압박했다고 보기 어려움
- * 인수 당시 비금융주력자임을 알고도 인수 승인을 내 주었다면 그 뒤로 이런 사실을 굳이 드러내려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은폐했을 가능성이 더 큼
- *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 은행감독과는 수십 차례의 서신과 해외 공관 협조 공문 발송을 통해 론스타를 압박하여 일본 비금융계열회사 내역과 자산규모를 제출 받았음.

□ (의문 2) 금융위원회는 왜 어렵게 일본 골프장과 호텔 등 비금융회사 자료를 받아낸 후,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은 이처럼 어렵게 자료를 제출받은 후 금융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 * 2008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해 은행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에서 금융위원회 은행과로 이관
- * 금융위는 론스타에 관한 한 법령의 해석, 감독, 제재 등 모든 권한을 보유한 기관

- 금융위는 마땅히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따라 론스타 및 그 동일인의 의결권을 시급하게 4%로 제한하고 과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어야 함
- * 은행법에 의해 비금융주력자의 의결권은 동일인 기준으로 4%로 제한
- * 코메르츠 방크와 수출입은행은 의결권 공동행사 계약 체결로 론스타와 동일인 관계
=> 론스타+수출입은행의 의결권은 4%로 제한(은행법에 의한 자동적 효력)
- * 금융위는 인수 당시의 적법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어야 함
- *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었다면 구태여 1년반동안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리 없음

- 론스타가 궁색하게 제시했던 “모든 지주회사는 기타투자기관으로서 금융회사”라는 논리는 쉽게 터무니없는 주장이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음
- * 금융회사 해당 여부는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은행법에 규정되어 있었음
- * 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는 금융회사로 분류되고,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로 분류되고 이는 매우 명쾌하게 해설된 상황
=> 따라서 이 주장을 수용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의문 3) 2011. 3. 16. 의 면죄부 발급을 전후하여 금융위 관료를 제외한 다른 금융위원회 위원은 어디까지 알고 있었을까?

-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론스타의 비금융 계열회사 내역을 조사한 후 그 자산합계가 1.7조원으로 2조원에 미달하므로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는 보고를 제출

- * 그러나 론스타가 2010. 12. 24. 에 제출한 자료에는 일본 골프장, 호텔 등이 빠져 있으므로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가 1.7조원에 당연히 미달
- *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과거 2008. 12. 24. 제출 자료에 근거해서 판단했다고 보아야 함
- * 예를 들어 일본 비금융 회사 자산 총계 중 PGM 만을 제외하고 극동건설을 합치면 그 규모가 대략 1.7조원에 달함
- *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일본의 비금융회사 일부는 보고하였고, 그러나 PGM은 어떤 논리에 의해 계산에서 제외했다고 금융위원회 위원들에게 설명했을 가능성 존재

- 금융위 관료를 제외한 다른 금융위원회 위원은 1.7조원의 계산 근거와 PGM 배제 논리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 제기가 있었으리라고 추측됨
- * 론스타가 제출한 적격성 자료에는 없는 1.7조원이라는 수치가 금융감독원의 설명 자료에 등장했기 때문
- * 특히 금융위원회 위원 중 법률전문가의 자격으로 포함된 위원은 마땅히 “모든 지주회사는 기타투자기관으로서 금융회사”라는 논리의 타당성을 검증할 의무

- 이런 의문은 설사 2011. 3. 16.의 적격성 심사에서는 스쳐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2011. 5. 25.에 일본 골프장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는 당연히 제기되었으리라고 추측하는 것이 자연스러움
- *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공식적인 보도자료는 모든 지주회사는 기타투자기관으로서 금융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음

7. 향후 과제

□ 진실 규명

- 앞에서 제기한 세 가지 의문에 대한 진실 규명 시급
- * 금융감독기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은폐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뿐만 아니라, 론스타에 대한 책임추궁과 ISD에 대한 올바른 대응전략 수립에 긴요
- 외환은행 인수에 참여한 투자자의 최종 내역 확인 시급
- * 특히 소위 “검은머리 투자자”가 존재할 경우 이들에 대한 과세 문제 처리 시급

- 책임자 처벌
- 만일 구 재정경제부, 구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구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응분의 처벌 필수

* 금융감독의 원리를 바로 세우고 추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 (끝)

참고자료 1

한도초과보유주주의 한도초과보유요건 충족여부 보고서

2007. 7. 10.

수 신: 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위원회 경유)

참 조: 은행감독국장(은행총괄팀)

제 목: 한도초과보유주주의 한도초과보유요건 충족여부 심사관련 추가자료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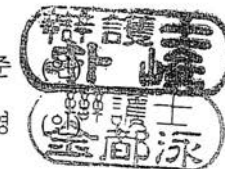
보고자의 2007. 6. 8.자 한도초과보유주주의 한도초과보유요건 충족여부 보고에 대한 귀원의 자료보완 요청에 따라, 특수관계인들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상의 최종 결산내역을 반영한 한도초과보유요건 충족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한도초과보유요건 충족현황 1 부. 끝.

사 본

보 고 자 Lone Star Partners IV, L.P.
Lone Star Fund IV (U.S.), L.P.
LSF-KEB Holdings, SCA

대 리 인 변호사 박 준
변호사 김 도 영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66 노스게이트빌딩
(전화: 3703-1114)

LSF IV B KOREA I, LP
STATEMENT OF ASSETS, LIABILITIES AND PARTNERS' CAPITAL (UNAUDITED)
DECEMBER 31, 2006

ASSETS

Investment in Lone Star Global Holdings, Ltd	\$ 484,464,672
Accounts receivable from affiliates	2,896,160
Total assets	<u>\$ 487,360,832</u>

LIABILITIES AND PARTNERS' CAPITAL

Partners' capital:	
General partner	81,144,549
Limited partner	<u>406,216,283</u>
Total partners' capital	<u>487,360,832</u>
Total liabilities and partners' capital	<u>\$ 487,360,832</u>

LONE STAR FUND IV (U.S.), L.P.
NOTES TO FINANCIAL STATEMENTS

1. Organization and Description of Limited Partnership Agreement

Organization

Lone Star Fund IV (U.S.), L.P., a Delaware limited partnership (the "Partnership"), was effective as of December 12, 2001. The Partnership has 38 limited partners (the "Limited Partners"), which hold 99% of the partnership interests, and Lone Star Partners IV, L.P., a Bermuda exempt limited partnership (the "General Partner") holds a 1% general partnership interest. The Partnership is a significant owner and investor in a variety of investment vehicles that targets a broad range of real estate related and other debt and equity investments in various asset classes, property types, transaction structures and sizes located throughout North America, Asia and Europe.

The objective of the Partnership is to achieve significant yields and capital gains for its partners over a projected three- to five-year holding period for each investment. The Partnership invests where it believes that it has a competitive advantage arising from the General Partner's expertise in origination, evaluation, management and disposition of real estate related and other debt and equity investments. The Partnership agreement allows for three subscription classes: (i) Limited Partners with capital commitments of at least \$150 million, but less than \$200 million, are defined under the limited partnership agreement as "Designated Limited Partners"; (ii) Limited Partners with capital commitments of at least \$200 million, but less than \$400 million, are defined as "Specified Limited Partners"; (iii) Limited Partners with capital commitments equal to or greater than \$400 million are defined as "Selected Limited Partners."

The General Partner of the Partnership is also the general partner of Lone Star Fund IV (Bermuda), L.P., a Bermuda exempt limited partnership (the "Bermuda Partnership"), which invests in similar types of investments as those of the Partnership. On December 12, 2001, the Bermuda Partnership and the Partnership (each a "Fund" and collectively the "Funds") entered into an agreement (the "Side-by-Side Agreement") that sets forth the contractual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Funds for the purpose of co-investing on a side-by-side basis. All investments of either Fund require approval of both Funds. Prior to funding an investment, the Funds collectively determine the portion of such investment that will be allocated to co-investors.

Summary of the Limited Partnership Agreement

The operations of the Partnership are governed by the First Amended and Restated Limited Partnership Agreement dated December 12, 2001, as amended (the "Agreement"). The right to manage, control and conduct the business and affairs of the Partnership is solely the responsibility of the General Partner. The General Partner is responsible for the evaluation, execution and management of the investments and investment opportunities of the Partnership. The Agreement provides that the Partnership will continue in existence until March 28, 2010. The Agreement also allows for up to two consecutive one-year extensions and for early termination if certain conditions, as defined in the Agreement, are met.

The General Partner and Limited Partners are committed to make capital contributions in the aggregate amount of approximately \$2.6 billion. With exceptions for follow-up investments and certain other limited circumstances, the Limited Partners' commitments expired on September 1, 2004,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the "Commitment Period"). At the expiration of the Commitment Period, all partners were released from any further obligation with respect to their unfunded commitments, except as outlined in the Agreement.

LONE STAR FUND IV (U.S.), L.P.
SCHEDULE OF INVESTMENTS
DECEMBER 31, 2006 AND 2005
(Dollars in Thousands)

	2006			2005		
Investments	Adjusted Cost*	Estimated Fair Value	Percentage of Net Assets	Adjusted Cost*	Estimated Fair Value	Percentage of Net Assets
Japan						
Real Estate						
LSF4 REOC I Class E - Mickey / EA Investments	\$ 1	\$ 180,152	10.24%	\$ 8	\$ 14,394	7.15%
LSF4 REOC VII Class H - Mega	66,582	134,159		134,977	144,289	
LSF4 REOC VI Class J - Kinkakuji	14,263	7,917		45,748	22,175	
Tokyo Capital Investments, Ltd - Project Max	-	67		16,895	27,498	
Operating Companies						
First Credit Holdings, LP - Japan CFC Investment	126,782	84,919	11.44%	135,448	154,250	18.50%
Tokyo Capital Investments, Ltd - Chisan Hotels	4,469	65,852		15,617	45,950	
Tokyo Capital Investments, Ltd - Chisan Golf	-	63,469		43,205	92,441	
LSF IV Golf Holdings, Ltd - JGP	20	62,235		28,831	92,112	
LSF IV Golf Holdings, Ltd - STT	28	50,918		9,868	72,040	
Tokyo Capital Investments, Ltd - Redwing / TCF	9,050	21,283		13,832	36,613	
LSF IV Golf Holdings, Ltd - Golf Other	7,243	9,896		35,542	30,794	
First Credit Holdings, LP - First Credit	44	1,541		13,456	15,422	
Loans						
LSF4 REOC II Class H - F4P1 Portfolio	21,607	36,702	2.22%	29,492	44,608	4.93%
LSF4 REOC VII Class C - SC-2005	46,761	19,002		50,154	56,242	
LSF4 REOC II Class I - SC-2004	157	14,143		22,218	42,920	
Other	7,520	63,411	2.02%	21,737	88,716	3.04%
	\$ 304,527	\$ 815,666	25.92%	\$ 617,028	\$ 980,464	33.62%

* Amounts generally represent the aggregate dollars invested by the Partnership adjusted for any distributions and income (loss) recognized from investments from acquisition dates through the respective year-end presented.

The accompanying notes are an integral part of these financial statements.

3

LONE STAR FUND IV (U.S.), L.P.
ACCOMPANYING INFORMATION
STATEMENT OF CHANGES IN INDIVIDUAL PARTNERS' CAPITAL
FOR THE YEAR ENDED DECEMBER 31, 2006

Partners	Partners' Capital December 31, 2005	Capital Distributions	Net Income	Partners' Capital December 31, 2006
General Partner				
Lone Star Partners IV, L.P.	\$ 421,294,817	\$ (116,788,057)	\$ 274,813,705	\$ 579,320,465
Limited Partners:				
Washington State Investment Board	394,691,821	(109,014,763)	120,656,396	406,333,454
Howard Hughes Medical Institute	394,691,821	(109,014,763)	120,656,396	406,333,454
Board of Trustees of the Leland Stanford Junior University	246,841,540	(68,172,758)	75,417,707	254,086,489
State of Oregon Public Employees' Retirement Fund	197,473,229	(54,538,207)	60,334,165	203,269,187
New York State Teachers' Retirement System	197,473,229	(54,538,207)	60,334,165	203,269,187
William and Flora Hewlett Foundation	197,473,229	(54,538,207)	60,334,165	203,269,187
California State Teachers' Retirement System	197,473,229	(54,538,207)	60,334,165	203,269,187
Bullshead Limited Liability Company	148,294,470	(40,949,073)	45,271,458	152,616,855
State of Wisconsin Investment Board - Real Estate Division	98,862,977	(27,299,382)	30,180,971	101,744,566
State of Wisconsin Investment Board - Opportunity Fund	49,431,493	(13,649,691)	15,090,484	50,872,286
University of Notre Dame Du Lac	39,342,082	(10,873,178)	11,974,222	40,443,126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34,424,319	(9,514,031)	10,477,445	35,387,733
Weyerhaeuser Company Master Retirement Trust	34,424,319	(9,514,031)	10,477,445	35,387,733
Houston Firefighters' Relief and Retirement Fund	24,588,799	(6,795,736)	7,483,887	25,276,950
John Deere Pension System	24,588,799	(6,795,736)	7,483,887	25,276,950
Fresno County Employees' Retirement Association	19,671,042	(5,436,589)	5,987,111	20,221,564
Dallas Police & Fire Pension System	19,671,042	(5,436,589)	5,987,111	20,221,564
Trustees of Columbia University in the City of New York	19,671,042	(5,436,589)	5,987,111	20,221,564
Houston Municipal Employees Pension System	17,212,163	(4,757,015)	5,238,722	17,693,870
Manbro R.E. I, L.P.	15,343,413	(4,240,539)	4,669,947	15,772,821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Basic Retirement Plan	14,753,278	(4,077,442)	4,490,334	15,166,170
Krusge Foundation	14,753,278	(4,077,442)	4,490,334	15,166,170
MAF Investments, Ltd.	12,491,109	(3,452,234)	3,801,816	12,840,691
Foundation Investments of Ohio, Ltd.	11,507,560	(3,180,404)	3,502,459	11,829,615
University of Louisville Foundation, Inc.	9,835,519	(2,718,294)	2,993,556	10,110,781
Surdna Foundation, Inc.	9,835,519	(2,718,294)	2,993,556	10,110,781
Scripps College	5,901,313	(1,630,977)	1,796,134	6,066,470
BMO Private Equity (U.S.), Inc.	4,917,759	(1,359,147)	1,496,777	5,055,389
Henry E. Huntington Library and Art Gallery	4,917,759	(1,359,147)	1,496,777	5,055,389
Red Fund I Series B, LLC	4,917,759	(1,359,147)	1,496,777	5,055,389
WFC Holdings Corporation	4,917,759	(1,359,147)	1,496,777	5,055,389
GuideStone Financial Resources of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4,917,759	(1,359,147)	1,496,777	5,055,389
John Oudt	4,917,759	(1,359,147)	1,496,777	5,055,389
Walter & Elise Haas Fund	3,934,207	(1,087,318)	1,197,423	4,044,312
Louisvill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2,950,654	(815,488)	898,067	3,033,233
Vateluse LLC	2,950,654	(815,488)	898,067	3,033,233
Lucile Packard Foundation for Children's Health	2,458,881	(679,574)	748,388	2,527,695
Claude Worthington Benedum Foundation	1,967,104	(543,659)	598,711	2,022,156
Subtotal Limited Partners	2,494,489,688	(689,004,787)	761,766,467	2,567,251,368
Totals	\$ 2,915,784,505	\$ (805,792,844)	\$ 1,036,580,172	\$ 3,146,571,833

LSF IVB KOREA II, L.P. NOTES TO FINANCIAL STATEMENTS

1. Organization and Description of Limited Partnership Agreement

Organization

LSF IVB Korea II, L.P. (the "Partnership") was formed as a Bermuda exempt limited partnership on October 20, 2003 (inception date), for the purpose of serving as a special investment vehicle for Lone Star Partners IV, L.P., a Bermuda exempt limited partnership (the "General Partner") and a certain affiliate of the limited partner (the "Limited Partner") who has invested with the General Partner in Lone Star Fund IV (Bermuda), L.P., a Bermuda exempt limited partnership (the "Bermuda Fund"). The Partnership has two investor classes, Class A and Class B. The Partnership has one general partner and one limited partner. The General Partner owns a 1.00% interest in Class A investments, and the Limited Partner owns 99.00%. The General Partner owns a 0.01% interest in Class B investments, and the Limited Partner owns 99.99%. The General Partner's aggregate interest in both classes is 0.9%, while the Limited Partner's aggregate interest in both classes is 99.10%. Class A of the Partnership was created pursuant to the directive for special investment vehicles in Section 3.06 of the First Amended and Restated Limited Partnership Agreement of the Bermuda Fund dated December 12, 2001 (inception date), as amended (the "Bermuda Fund Agreement"). The Partnership invests indirectly in the capital stock and other securities of the Korea Exchange Bank ("KEB").

Summary of the Limited Partnership Agreement

The operations of the Partnership are governed by the First Amended and Restated Limited Partnership Agreement dated October 20, 2003 (the "Agreement"). The right to manage, control and conduct the business and affairs of the Partnership is solely the responsibility of the General Partner. The General Partner is responsible for the evaluation, execution and management of the investment and investment opportunities of the Partnership. The Agreement provides that the Partnership will continue in existence until October 20, 2011. The Agreement also allows for up to two consecutive one-year extensions and for early termination if certain conditions, as defined in the Agreement, are met.

Capital Contributions

The Agreement calls for two classes of capital contributions, Class A and Class B. At the time that the General Partner determines that an investment meets the investment parameters of the Bermuda Fund Agreement for Class A investors, the General Partner notifies the partners in the Bermuda Fund, and such partners assign the applicable portion of their subscription commitments (thereby reducing such commitments by the assigned amount) to each of their respective affiliates who are partners in the Partnership, and the General Partner calls the amount of capital set forth in the assigned subscription from such affiliates into the Partnership to close the applicable investment. For Class B investors, the General Partner and Limited Partner are committed, in aggregate, to contribute approximately \$25 million.

The Limited Partner's commitment for Class A contributions, with exceptions for follow-up investments and certain other limited circumstances, expired on September 1, 2004. The Limited Partner's commitment for Class B contributions expired on December 31, 2004. At th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e commitment period, all partners were released from any further obligation with respect to their unfunded commitments, except as outlined in the Agreement.

LSF IVB KOREA II, L.P. ACCOMPANYING INFORMATION STATEMENT OF CHANGES IN INDIVIDUAL PARTNERS' CAPITAL FOR THE YEAR ENDED DECEMBER 31, 2006

Partner	Partners' Capital December 31, 2005	Capital Distributions	Net Income	Partners' Capital December 31, 2006
General Partner:				
Lone Star Partners IV, L.P. Class A	\$ 77,053,216	\$ (3,882)	\$ 49,249,454	\$ 126,298,788
Lone Star Partners IV, L.P. Class B	8,998,445	-	5,536,565	14,535,010
Subtotal General Partner	86,051,661	(3,882)	54,786,019	140,833,798
Limited Partner:				
Cadfund L.P. Class A	484,358,311	(384,307)	154,216,587	638,190,591
Cadfund L.P. Class B	53,547,138	-	17,272,451	70,819,589
Subtotal Limited Partner	537,905,449	(384,307)	171,489,038	709,010,180
Subtotal Class A	561,411,527	(388,189)	203,466,041	764,489,379
Subtotal Class B	62,545,583	-	22,809,016	85,354,599
Total	\$ 623,957,110	\$ (388,189)	\$ 226,275,057	\$ 849,843,978

KEB INVESTORS, L.P. NOTES TO FINANCIAL STATEMENTS

1. Organization and Description of Limited Partnership Agreement

Organization

KEB Investors, L.P. (the "Partnership") was formed as a Bermuda exempt limited partnership on September 3, 2003 (inception date). The Partnership has one general partner and one limited partner (the "Limited Partner"). Lone Star Partners IV, L.P. (the "General Partner"), a Bermuda exempt limited partnership, owns a 0.01% interest. The Partnership invests indirectly in the capital stock and other securities of the Korea Exchange Bank ("KEB").

Operations

The operations of the Partnership are governed by the First Amended and Restated Limited Partnership Agreement dated September 5, 2003 (the "Agreement"). The right to manage, control and conduct the business and affairs of the Partnership is solely the responsibility of the General Partner. The General Partner is responsible for the evaluation, execution and management of the Partnership. The Agreement provides that the Partnership will continue in existence until September 5, 2011. The Agreement also allows for up to two consecutive one-year extensions and for early termination if certain conditions, as defined in the Agreement, are met.

Capital Contributions

The General Partner and Limited Partner are committed to make capital contributions in the aggregate amount of approximately \$100 million. With exceptions for follow-up investments and certain other limited circumstances, the Limited Partner's commitment expired on December 31, 2004. All capital commitments have been fully funded.

Subject to certain limitations set forth in the Agreement, the General Partner may call additional capital to the extent necessary to pay the costs and expenses of the Partnership and to make additional investments relating to existing Partnership assets.

Allocation of Partnership Distributions, Profits and Losses

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cash distributions, exclusive of management fees, are calculated and allocated as follows for each investment with distributable funds (the "Relevant Investment"):

- (i) First, 100% of the excess of all available funds in excess of any reserves the General Partner deems necessary (the "Distributable Funds") will be distributed to and retained by the Limited Partner until it has received from the Partnership, on a cumulative basis, a return of all capital contributed by the Limited Partner;
- (ii) Second, 100% of such remaining Distributable Funds will be distributed to and retained by the Limited Partner until it has received from the Partnership, on a cumulative basis, a 10% compounded annual return on all capital contributed with respect to the Relevant Investment;
- (iii) Third, 100% of such remaining Distributable Funds will be distributed 80% to the Limited Partner and 20% to the General Partner until the cumulative distributions from the Partnership in clause (ii) above plus this clause (iii), with respect to the Relevant Investment, equal a total 15% compounded annual return on all capital contributed with respect to the Relevant Investment;

KEB INVESTORS II, L.P. NOTES TO FINANCIAL STATEMENTS

1. Organization and Description of Limited Partnership Agreement

Organization

KEB Investors II, L.P. (the "Partnership") was formed as a Bermuda exempt limited partnership on September 24, 2003 (inception date). The Partnership has one general partner and four limited partners (the "Limited Partners"). Lone Star Partners IV, L.P. (the "General Partner"), a Bermuda exempt limited partnership, owns a 0.01% interest. The Partnership invests indirectly in the capital stock and other securities of the Korea Exchange Bank ("KEB").

Operations

The operations of the Partnership are governed by the First Amended and Restated Limited Partnership Agreement dated October 27, 2003 (the "Agreement"). The right to manage, control and conduct the business and affairs of the Partnership is solely the responsibility of the General Partner. The General Partner is responsible for the evaluation, execution and management of the Partnership. The Agreement provides that the Partnership will continue in existence until October 27, 2011. The Agreement also allows for up to two consecutive one-year extensions and for early termination if certain conditions, as defined in the Agreement, are met.

Capital Contributions

The General Partner and Limited Partners are committed to make capital contributions in the aggregate amount of approximately \$47 million. With exceptions for follow-up investments and certain other limited circumstances, the Limited Partners' commitments expired on December 31, 2004. All capital commitments have been fully funded.

Subject to certain limitations set forth in the Agreement, the General Partner may call additional capital to the extent necessary to pay the costs and expenses of the Partnership and to make additional investments relating to existing Partnership assets.

Allocation of Partnership Distributions, Profits and Losses

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cash distributions, exclusive of management fees, are calculated and allocated as follows for each investment with distributable funds (the "Relevant Investment"):

- (i) First, 100% of the excess of all available funds in excess of any reserves the General Partner deems necessary (the "Distributable Funds") will be distributed to and retained by the Limited Partners until they have received from the Partnership, on a cumulative basis, a return of all capital contributed by the Limited Partners;
- (ii) Second, 100% of such remaining Distributable Funds will be distributed to and retained by the Limited Partners until they have received from the Partnership, on a cumulative basis, a 10% compounded annual return on all capital contributed with respect to the Relevant Investment;
- (iii) Third, 100% of such remaining Distributable Funds will be distributed 80% to the Limited Partners and 20% to the General Partner until the cumulative distributions from the Partnership in clause (ii) above plus this clause (iii), with respect to the Relevant Investment, equal a total 15% compounded annual return on all capital contributed with respect to the Relevant Investment;

KEB INVESTORS III, L.P. NOTES TO FINANCIAL STATEMENTS

1. Organization and Description of Limited Partnership Agreement

Organization

KEB Investors III, L.P. (the "Partnership") was formed as a Bermuda exempt limited partnership on October 10, 2003 (inception date). The Partnership has one general partner and one limited partner (the "Limited Partner"). Lone Star Partners IV, L.P. (the "General Partner"), a Bermuda exempt limited partnership, owns a 0.01% interest. The Partnership invests indirectly in the capital stock and other securities of the Korea Exchange Bank ("KEB").

Operations

The operations of the Partnership are governed by the First Amended and Restated Limited Partnership Agreement dated October 27, 2003 (the "Agreement"). The right to manage, control and conduct the business and affairs of the Partnership is solely the responsibility of the General Partner. The General Partner is responsible for the evaluation, execution and management of the Partnership. The Agreement provides that the Partnership will continue in existence until October 27, 2011. The Agreement also allows for up to two consecutive one-year extensions and for early termination if certain conditions, as defined in the Agreement, are met.

Capital Contributions

The General Partner and Limited Partner are committed to make capital contributions in the aggregate amount of approximately \$46 million. With exceptions for follow-up investments and certain other limited circumstances, the Limited Partner's commitment expired on December 31, 2004. All capital commitments have been fully funded.

Subject to certain limitations set forth in the Agreement, the General Partner may call additional capital to the extent necessary to pay the costs and expenses of the Partnership and to make additional investments relating to existing Partnership assets.

Allocation of Partnership Distributions, Profits and Losses

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cash distributions, exclusive of management fees, are calculated and allocated as follows for each investment with distributable funds (the "Relevant Investment"):

- (i) First, 100% of the excess of all available funds in excess of any reserves the General Partner deems necessary (the "Distributable Funds") will be distributed to and retained by the Limited Partner until it has received from the Partnership, on a cumulative basis, a return of all capital contributed by the Limited Partner;
- (ii) Second, 100% of such remaining Distributable Funds will be distributed to and retained by the Limited Partner until it has received from the Partnership, on a cumulative basis, a 10% compounded annual return on all capital contributed with respect to the Relevant Investment;
- (iii) Third, 100% of such remaining Distributable Funds will be distributed 80% to the Limited Partner and 20% to the General Partner until the cumulative distributions from the Partnership in clause (ii) above plus this clause (iii), with respect to the Relevant Investment, equal a total 15% compounded annual return on all capital contributed with respect to the Relevant Investment;

KEB INVESTORS IV, L.P. NOTES TO FINANCIAL STATEMENTS

1. Organization and Description of Limited Partnership Agreement

Organization

KEB Investors IV, L.P. (the "Partnership") was formed as a Bermuda exempt limited partnership on October 20, 2003 (inception date). The Partnership has one general partner and one limited partner (the "Limited Partner"). Lone Star Partners IV, L.P. (the "General Partner"), a Bermuda exempt limited partnership, owns a 0.01% interest. The Partnership invests indirectly in the capital stock and other securities of the Korea Exchange Bank ("KEB").

Operations

The operations of the Partnership are governed by the First Amended and Restated Limited Partnership Agreement dated October 27, 2003 (the "Agreement"). The right to manage, control and conduct the business and affairs of the Partnership is solely the responsibility of the General Partner. The General Partner is responsible for the evaluation, execution and management of the Partnership. The Agreement provides that the Partnership will continue in existence until October 27, 2011. The Agreement also allows for up to two consecutive one-year extensions and for early termination if certain conditions, as defined in the Agreement, are met.

Capital Contributions

The General Partner and Limited Partner are committed to make capital contributions in the aggregate amount of approximately \$54 million. With exceptions for follow-up investments and certain other limited circumstances, the Limited Partner's commitment expired on December 31, 2004. All capital commitments have been fully funded.

Subject to certain limitations set forth in the Agreement, the General Partner may call additional capital to the extent necessary to pay the costs and expenses of the Partnership and to make additional investments relating to existing Partnership assets.

Allocation of Partnership Distributions, Profits and Losses

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cash distributions, exclusive of management fees, are calculated and allocated as follows for each investment with distributable funds (the "Relevant Investment"):

- (i) First, 100% of the excess of all available funds in excess of any reserves the General Partner deems necessary (the "Distributable Funds") will be distributed to and retained by the Limited Partner until it has received from the Partnership, on a cumulative basis, a return of all capital contributed by the Limited Partner;
- (ii) Second, 100% of such remaining Distributable Funds will be distributed to and retained by the Limited Partner until it has received from the Partnership, on a cumulative basis, a 10% compounded annual return on all capital contributed with respect to the Relevant Investment;
- (iii) Third, 100% of such remaining Distributable Funds will be distributed 80% to the Limited Partner and 20% to the General Partner until the cumulative distributions from the Partnership in clause (ii) above plus this clause (iii), with respect to the Relevant Investment, equal a total 15% compounded annual return on all capital contributed with respect to the Relevant Investment;

LSF IV B KOREA I, LP
STATEMENT OF ASSETS, LIABILITIES AND PARTNERS' CAPITAL (UNAUDITED)
DECEMBER 31, 2006

ASSETS

Investment in Lone Star Global Holdings, Ltd	\$ 484,464,672
Accounts receivable from affiliates	2,896,160
Total assets	<u>\$ 487,360,832</u>

LIABILITIES AND PARTNERS' CAPITAL

Partners' capital:	
General partner	81,144,549
Limited partner	<u>406,216,283</u>
Total partners' capital	<u>487,360,832</u>
Total liabilities and partners' capital	<u>\$ 487,360,832</u>

LONE STAR FUND IV (U.S.), L.P.
NOTES TO FINANCIAL STATEMENTS

1. Organization and Description of Limited Partnership Agreement

Organization

Lone Star Fund IV (U.S.), L.P., a Delaware limited partnership (the "Partnership"), was effective as of December 12, 2001. The Partnership has 38 limited partners (the "Limited Partners"), which hold 99% of the partnership interests, and Lone Star Partners IV, L.P., a Bermuda exempt limited partnership (the "General Partner") holds a 1% general partnership interest. The Partnership is a significant owner and investor in a variety of investment vehicles that targets a broad range of real estate related and other debt and equity investments in various asset classes, property types, transaction structures and sizes located throughout North America, Asia and Europe.

The objective of the Partnership is to achieve significant yields and capital gains for its partners over a projected three- to five-year holding period for each investment. The Partnership invests where it believes that it has a competitive advantage arising from the General Partner's expertise in origination, evaluation, management and disposition of real estate related and other debt and equity investments. The Partnership agreement allows for three subscription classes: (i) Limited Partners with capital commitments of at least \$150 million, but less than \$200 million, are defined under the limited partnership agreement as "Designated Limited Partners"; (ii) Limited Partners with capital commitments of at least \$200 million, but less than \$400 million, are defined as "Specified Limited Partners"; (iii) Limited Partners with capital commitments equal to or greater than \$400 million are defined as "Selected Limited Partners."

The General Partner of the Partnership is also the general partner of Lone Star Fund IV (Bermuda), L.P., a Bermuda exempt limited partnership (the "Bermuda Partnership"), which invests in similar types of investments as those of the Partnership. On December 12, 2001, the Bermuda Partnership and the Partnership (each a "Fund" and collectively the "Funds") entered into an agreement (the "Side-by-Side Agreement") that sets forth the contractual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Funds for the purpose of co-investing on a side-by-side basis. All investments of either Fund require approval of both Funds. Prior to funding an investment, the Funds collectively determine the portion of such investment that will be allocated to co-investors.

Summary of the Limited Partnership Agreement

The operations of the Partnership are governed by the First Amended and Restated Limited Partnership Agreement dated December 12, 2001, as amended (the "Agreement"). The right to manage, control and conduct the business and affairs of the Partnership is solely the responsibility of the General Partner. The General Partner is responsible for the evaluation, execution and management of the investments and investment opportunities of the Partnership. The Agreement provides that the Partnership will continue in existence until March 28, 2010. The Agreement also allows for up to two consecutive one-year extensions and for early termination if certain conditions, as defined in the Agreement, are met.

The General Partner and Limited Partners are committed to make capital contributions in the aggregate amount of approximately \$2.6 billion. With exceptions for follow-up investments and certain other limited circumstances, the Limited Partners' commitments expired on September 1, 2004,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the "Commitment Period"). At the expiration of the Commitment Period, all partners were released from any further obligation with respect to their unfunded commitments, except as outlined in the Agreement.

참고자료 2

한도초과보유주주의 한도초과보유요건 충족여부 보고서

2007. 7. 10.

수 신: 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위원회 경유)

참 조: 은행감독국장(은행총괄팀)

제 목: 한도초과보유주주의 한도초과보유요건 충족여부 심사관련 추가자료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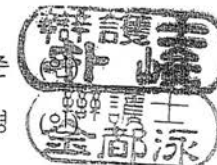
보고자의 2007. 6. 8.자 한도초과보유주주의 한도초과보유요건 충족여부 보고
에 대한 귀원의 자료보완 요청에 따라, 특수관계인들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상의
최종 결산내역을 반영한 한도초과보유요건 충족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한도초과보유요건 충족현황 1 부. 끝.

사 본

보 고 자 Lone Star Partners IV, L.P.
Lone Star Fund IV (U.S.), L.P.
LSF-KEB Holdings, SCA

대 리 인 변호사 박 준
변호사 김 도 영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66 노스게이트빌딩
(전화: 3703-1114)

본

LONE STAR FUND IV (U.S.), L.P.
NOTES TO FINANCIAL STATEMENTS, Continued

5. Related Party Transactions, continued

The following related party transactions occurred between affiliates of Lone Star Opportunity Fund, L.P. ("LSOF"), affiliates of Lone Star Fund II (U.S.), L.P. and Lone Star Fund II (Bermuda), L.P. (collectively "Lone Star Fund II"), affiliates of Lone Star Fund III (U.S.), L.P. and Lone Star Fund III (Bermuda), L.P. (collectively "Lone Star Fund III"), affiliates of Lone Star Fund V (U.S.), L.P. and Lone Star Fund V (Bermuda), L.P. (collectively "Lone Star Fund V"), and affiliates of the Funds at terms consistent with market value. The general partner of LSOF, the general partner of Lone Star Fund II, the general partner of Lone Star Fund III, the general partner of Lone Star Fund V and the General Partner are under common control.

(모든 론스타 펀드는 동일인!)

The related party transactions were reviewed and approved by each of the respective advisory committees of LSOF, Lone Star Fund II, Lone Star Fund III, Lone Star Fund V and the Funds, as applicable.

← 솔라레 호텔 소유 시인

Solare Hotels and Resorts, K.K. ("Solare"), an entity owned by the Funds, manages a hotel owned by Lone Star Fund III and hotels owned by Lone Star Fund V. Solare charges fees for services provided to the hotels.

Star Capital, an entity owned by the Funds, has subsidiaries that provide management services to assets owned by LSOF, Lone Star Fund II, Lone Star Fund III and Lone Star Fund V. The Star Capital subsidiaries charge fees for services provided to the assets.

Pacific Golf Management, K.K. ("PGM"), owned by Lone Star Fund III, manages golf courses owned by Lone Star Fund III and golf courses owned by the Funds. PGM charges fees for services to the various golf courses.

PGM 골프장 소유 시인

During 2006, the Funds entered into a joint sales agreement with Lone Star Fund III. Pursuant to the terms of the agreement, Leipziger Tor, an investment of the Funds, and LSF Wohnpark Investments ("Hellersdorf"), an investment of Lone Star Fund III, were jointly sold to a third party purchaser.

During 2006, Project Zoo, an investment owned by Lone Star Fund V, entered into an agreement with Kukdong Construction, an investment owned by the Funds, for construction services. Pursuant to the terms of the agreement, the amount for the construction services was the U.S. dollar equivalent of approximately \$3.6 million.

During 2006, the Funds, Lone Star Fund III and Lone Star Fund V entered into a joint financing agreement with a third-party lender. Pursuant to the terms of the financing agreement, the assets from each fund were cross-collateralized. Additionally, a cross indemnity agreement was established between the Funds, Lone Star Fund III and Lone Star Fund V.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e financing agreement, investments associated with the Funds, investments associated with Lone Star Fund III and investments associated with Lone Star Fund V financed the U.S. dollar equivalent of approximately \$15.1 million, \$92 thousand and \$292.9 million, respectively.

공동의
계산으로
대출받고
연대 책임
으로 담보
제공

Lone Star Partners IV, L.P.

선 람	준	지 시	2008년 9월 7일
접 일 자	2008. 9. 9	결 재	
수 번 호	143	공 람	
처 리 과	은행사	심 사 자	심 사 일
담 당 자	신상		
심 사 자			

금융위원회

서울 서초구 반포로 648 (우편번호 137-756)

참조: 금융정책국 은행과 이해선 과장님

제목: 론스타 펀드 IV 특수관계인의 해외투자 사실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자료제공 요구
관련

- 이 서신은 귀 위원회의 2008년 7월 25일자 "론스타펀드 IV 특수관계인의 해외투자 사실 여부 등에 대한 추가자료 제공요구 및 제출시한 통보" 공문(은행과-972)에 대한 회신입니다.
- 저희들은 2008년 1월 29일자 서신에 의하여, ① Lone Star Capital Management SPRL(이하 "LSCM"이라 합니다)이 출자한 18개 회사에 대한 출자현황 및 ② 위 18개 회사 중 Lone Star Fund IV (U.S.), L.P.(이하 "LSF IV"라 합니다)의 한국 내 투자와 관련된 5개 회사(LSF-KEB Holdings SCA, HL Holdings SCA, LSF SLF Holdings SCA, Kukdong Holdings I SCA 및 Kukdong Holdings II SCA)의 국내 출자현황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 그런데, 귀 위원회는 2008년 2월 14일자 "론스타펀드 IV 특수관계인의 해외투자 사실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자료제공 요구" 공문(은행감독과-161) 및 위 2008년 7월 25일자 공문을 통하여 LSCM이 출자한 회사 중 2008년 1월 29일자 서신에 의하여 국내 출자현황에 관한 자료가 이미 제출된 위 5개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회사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현황에 관한 자료제공을 추가로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귀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론스타펀드 IV와 관련하여 위 13개 회사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현황에 관한 자료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귀 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2003년 9월 LSF IV의 한국의환은행 주식취득 승인 당시 는 물론, 그 후 매년 2회 반기별로 계속되어 온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심사과정에 있어서도 한국의환은행과 직·간접적 지분관계가 없는 LSF IV의 해외 계열회사

LSCM이 출자한 회사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현황 (2006. 12. 31. 현재)

구분	회사 ¹	출자회사	출자지분	출자일자	출자회사의 설립일자	금융연중 해당여부	자본총액 (2006. 12. 31.)	자산총액 (2006. 12. 31.)
1	LSF Transcontinental Holdings SCA	Ninomiya Co., Ltd.	100%	2005. 10. 11.	1966. 8. 18.	해당하지 않음	₩908,982,926	₩2,069,797,771
2	Star Management Holdings SCA	Pacific Golf Group International Holdings K.K.	64.42%	2004. 12. 9.	2004. 12. 9.	해당하지 않음	₩41,798,000,000	₩224,017,000,000
3	First Credit Investments SCA ¹	해당사항 없음						
4	LSF Tokyo Star Holdings SCA	해당사항 없음						
5	LSF-TS Holdings SCA	해당사항 없음						
6	LSF EA Holdings SCA	Gashu Enterprise Co., Ltd.	99.9507%	2005. 10. 20.	1989. 5. 16.	해당하지 않음	₩10,128,951,892	₩121,271,880,626
7	LSF SHR Holdings SCA	Solare Hotels and Resorts K.K.	100%	2005. 12. 23.	1989. 9. 1.	해당하지 않음	₩78,898,465	₩17,111,923,158

PGM 공표장

아수 엔터프라이즈

¹ First Credit Investments SCA 는 2007. 3. 청산됨.

슬라레 호텔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초과보유요건등 충족여부 보고서

2010. 12. 24.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은행총괄팀(은행서비스총괄국) 장진택 수석조사역님

사본수신: 금융위원회(금융서비스국 은행과)

제 목: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초과보유요건등 충족여부 보고

귀원의 2010년 11월 30일자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은행법 제16조의4 제1항에
기한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 충족 여부 심사에 필요한 2007년 6월말 기
준의 적격성 심사자료를 불입과 같이 제출합니다.

불 입: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초과보유요건등 충족현황 1부. 끝.

보 고 자 Lone Star Partners IV, L.P.
Lone Star Fund IV (U.S.), L.P.
LSF-KEB Holdings, SCA

대 리 인 변호사 김 도 영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66 노스게이트빌딩
(전화: 3703-1114)

금융감독원		선결
접수일자	2010. 12. 24	지시사항
접수번호	017910	
주무과		
발령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초과보유요건등 충족여부 보고서

2010. 12. 24.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은행총괄팀(은행서비스총괄국) 장진택 수석조사역님
사본수신: 금융위원회(금융서비스국 은행과)
제 목: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초과보유요건등 충족여부 보고

귀원의 2010년 11월 30일자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은행법 제16조의4 제1항에
기한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 충족 여부 심사 필요한 2007년 12월말 기
준의 적격성 심사자료를 불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불 임: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초과보유요건등 충족현황 1부. 끝.

보 고 자 Lone Star Partners IV, L.P.
Lone Star Fund IV (U.S.), L.P.
LSF-KEB Holdings, SCA

대 리 인 변호사 김 도 영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66 노스게이트빌딩

(전화: 3703-1114)

금융감독원		선결	지시사항
접수일자	2010.12.24	지시사항	
접수번호	017911		
주무과			
결재·승인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초과보유요건등 충족여부 보고서

2010. 12. 24.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은행총괄팀(은행서비스총괄국) 장진택 수석조사역님
사본수신: 금융위원회(금융서비스국 은행과)
제 목: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초과보유요건등 충족여부 보고

귀원의 2010년 11월 30일자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은행법 제16조의4 제1항에
기한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 충족 여부 심사 필요한 2008년 6월말 기
준의 적격성 심사자료를 불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불 임: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초과보유요건등 충족현황 1부. 끝.

보 고 자 Lone Star Partners IV, L.P.
Lone Star Fund IV (U.S.), L.P.
LSF-KEB Holdings, SCA

대 리 인 변호사 김 도 영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66 노스게이트빌딩

(전화: 3703-1114)

금융감독원		선결	지시사항
접수일자	2010.12.24	지시사항	
접수번호	017912		
주무과			
결재·승인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초과보유요건등 충족여부 보고서

2010. 12. 24.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은행총괄팀(은행서비스총괄국) 장진택 수석조사역님

사본수신: 금융위원회(금융서비스국 은행과)

제 목: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초과보유요건등 충족여부 보고

위원의 2010년 11월 30일자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은행법 제16조의4 제1항에
기한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초과보유요건 충족 여부 심사 필요 2008년 12월말 기
준의 적격성 심사자료를 불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불 임: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초과보유요건등 충족현황 1 부. 끝.

보 고 자 Lone Star Partners IV, L.P.
Lone Star Fund IV (U.S.), L.P.
LSF-KEB Holdings, SCA

대 리 인 변 호 사 김 도 영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66 노스게이트빌딩
(전화: 3703-1114)

금융감독원		선결	328
접수일자	2010. 12. 24	지시사항	
접수번호	017913		
주무과			
발행일자			
발행처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초과보유요건등 충족여부 보고서

2010. 12. 24.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은행총괄팀(은행서비스총괄국) 장진택 수석조사역님

사본수신: 금융위원회(금융서비스국 은행과)

제 목: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초과보유요건등 충족여부 보고

위원의 2010년 11월 30일자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은행법 제16조의4 제1항에
기한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초과보유요건 충족 여부 심사 필요 2009년 6월말 기
준의 적격성 심사자료를 불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불 임: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초과보유요건등 충족현황 1 부. 끝.

보 고 자 Lone Star Partners IV, L.P.
Lone Star Fund IV (U.S.), L.P.
LSF-KEB Holdings, SCA

대 리 인 변 호 사 김 도 영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66 노스게이트빌딩
(전화: 3703-1114)

금융감독원		선결	328
접수일자	2010. 12. 24	지시사항	
접수번호	017914		
주무과			
발행일자			
발행처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초과보유요건등 충족여부 보고서

2010. 12. 24.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은행총괄팀(은행서비스총괄국) 장진택 수석조사역님

사본수신: 금융위원회(금융서비스국 은행과)

제 목: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초과보유요건등 충족여부 보고

귀원의 2010년 11월 30일자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은행법 제16조의4 제1항에
기한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 충족 여부 심사에 필요한 2009년 12월말 기
준의 적격성 심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초과보유요건등 충족현황 1부. 끝.

보 고 자 Lone Star Partners IV, L.P.
Lone Star Fund IV (U.S.), L.P.
LSF-KEB Holdings, SCA

대 리 인 변호사 김 도 영 (인)

서울특별시 중로구 적선동 66 노스게이트빌딩
(전화: 3703-1114)

금융감독원		연월일	2010.12
접수번호		017915	
주무과			
결재	공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초과보유요건등 충족여부 보고서

2010. 12. 24.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은행총괄팀(은행서비스총괄국) 장진택 수석조사역님

사본수신: 금융위원회(금융서비스국 은행과)

제 목: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초과보유요건등 충족여부 보고

귀원의 2010년 11월 30일자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은행법 제16조의4 제1항에
기한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 충족 여부 심사에 필요한 2010년 6월말 기
준의 적격성 심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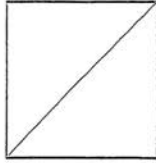
붙 임: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초과보유요건등 충족현황 1부. 끝.

보 고 자 Lone Star Partners IV, L.P.
Lone Star Fund IV (U.S.), L.P.
LSF-KEB Holdings, SCA

대 리 인 변호사 김 도 영 (인)

서울특별시 중로구 적선동 66 노스게이트빌딩
(전화: 3703-1114)

금융감독원		연월일	2010.12.24
접수번호		017916	
주무과			
결재	공		



議案番號	第 號
議決 年月日	2011. 3. 16. (第 5 次)

報告事項

(주)한국의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결과 보고

사 본

金融委員會會議案件

提出者	金融監督院長 金鍾稔
提出年月日	2011. 3. 16.

III.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

< 진행경과 및 확인내용 >

- ☐ '03.9월 론스타펀드IV의 (주)한국의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시부터 '10.6월말 반기별 적격성 심사시까지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펀드IV가 제출한 자료와 회계법인의 확인서 등을 통해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를 확인한 결과,
 - 론스타펀드IV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 특히, '07년초 일부 시민단체 등이 '06년말 기준 론스타에 대한 적격성 심사시 론스타의 해외투자내역까지 감안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보다 심도있는 확인작업을 진행
- ☐ 그간 우리 금융감독당국은 외국인 주주의 해외투자내역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해외공관 및 외국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론스타펀드IV의 현지 투자내역을 입수
 - 입수한 정보 및 자료를 토대로 론스타펀드IV로부터 관련 세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작업을 진행
- ☐ 론스타펀드IV가 제출한 최종자료에 따르면 론스타펀드IV의 비금융회사 비중은 자본기준으로 3.0%, 자산기준으로 1.7조원으로서 론스타펀드IV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 비금융주력자 기준(은행법§2①9호 및 동법 시행령 §1의5)
 - (자본기준) 동일인중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 합계액이 전체의 25% 이상
 - (자산기준) 동일인중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2조원 이상

< 추가 검토 사항 >

- ☐ 아울러 제출된 자료만을 기준으로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법의 일반원칙, 비금융주력자제도 취지, 다른 은행과의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타당한 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 ☐ (은행법 적용 한계) 외국인 주주 및 그 관계회사의 대부분은 우리 법령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국인 주주의 제출자료를 기초로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한계
 - 은행 등 금융회사의 외국인 주주자격 충족에 관한 서류는 필요시 외국감독당국의 확인을 거쳐 외국인 주주로부터 제출받는 것이 금융관련법 적용의 관행

금융위원회는 ‘브로커’ 조직인가, 범죄조직인가?

.....

권 영 국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는 ‘브로커’ 조직인가, 범죄조직인가?

권영국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자료를 은닉하고 심사내용을 조작하여 론스타의 은행 보유 자격을 세탁해주고, 5조원에 가까운 ‘먹튀’를 지원한 금융위원회 관련자들의 행위는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되어야 할 때 국적인 범죄행각이다.

1. 범죄요지

가. 관련자들의 지위

고발대상으로 예정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금융정책,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들로서, **진동수**는 2009. 1. 20.부터 2011. 1. 2.까지, **김석동**은 2011. 1. 3.부터 2013. 2. 24.까지 각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였고, **권혁세**는 2009. 11. 17.부터 2011. 3. 26.까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2011. 3.부터 2013. 3.까지 금융감독원장으로 각 재직하였으며, **이해선**은 2008. 3. 11.부터 2009. 1. 20.까지, **최훈**은 2009. 1. 21.부터 2010. 2. 18.까지, **김근익**은 2010. 2. 19.부터 2011. 1. 31.까지, **성대규**는 2011. 2. 1.부터 2012. 2. 16.까지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으로 각 재직하였던 자이다.

위 관련자들은 위와 같은 지위에서 엘에스에프-케이이비 홀딩스 에스씨에이{이하 “LSF(론스타)” 라 함}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관련 은행법 제16조의4 소정의 반기적격성 내지 수시적격성 심사 직무를 수행해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LSF(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 결과 비금융주력자로 판명될 경우 그 즉시 한도초과보유주주 요건충족명령(제16조의4 제3항) 및 요건 미충족시 주식의 처분명령(제16조의 4 제5항)을 내려야 할 의무가 있다.¹⁾

1) 은행법 [법률 제9784호, 2009.06.09, 일부개정]

제16조의4(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개정 2009.6.9>)

① 금융위원회는 제15조제3항, 제15조의2제1항, 제15조의3제1항 및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라 한다)가 당해 주식을 보유한 후에도 각각 제15조제5항, 제15조의2제6항 및 제15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승인의 요건(이하 이 조에서 "초과보유요건등"이라 한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9>

나. 범죄혐의요지

김석동, 권혁세, 성대규를 직무유기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진동수, 이해선, 최훈, 김근익은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고자 한다.

유사한 사유로 김석동 외 14(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포함)인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바 있으나,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은 해당 고발 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2형제12293 등, 이하 “기존고발사건” 이라 함).

그러나 검찰의 **각하 결정은 당시 피고발인들의 증거은닉 및 허위진술에 기인한 것으로** , 이러한 사실은 한국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자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2013. 12. 30. 선고 2013두 17503 판결)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공개된 자료를 통해 드러나게 된 것이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기관 또는 한도초과보유주주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6.9>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6.9>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은 당해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제15조제3항 제1호에서 정한 한도(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비금융주력자인 경우에는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말하고,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은 비금융주력자이거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말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09.6.9>
-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당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6.9>
-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초과보유요건등의 충족 여부 심사 시 제16조의2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09.6.9.> [본조 신설 2002.4.27]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10.09 [대통령령 제21775호, 시행 2009.10.10]
제11조의4(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절차 등 <개정 2009.10.9>)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매반기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한도초과보유주주등과 금융기관과의 불법거래 징후가 있는 경우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0.9>
- ② 제1항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10.9.> [본조신설 2002.8.21]

위 소송의 결과로, 금융감독당국(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총칭하여 이와 같이 표현함)이 공개한 자료(이하 “본건 공개자료” 라 함)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적어도 2007. 7. 10. 한국외환은행 인수 주체인 LSF(론스타)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 서류를 통해 LSF(론스타)가 비금융 계열회사(은행법 소정의 동일인)인 일본내 골프장 법인 PGM(아래 설명 참조)과 일본내 호텔법인 Solare(아래 설명 참조)로 인해 은행법 소정의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더욱 놀라는 것은 LSF(론스타)가 2008. 9. 9.경 금융위원회 당시 과장인 이해선에게 제출한 문서에서 자신이 비금융주력자임을 시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LSF(론스타)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 내 골프장 법인인 Pacific Golf Group International Holdings(이하 “PGM²⁾”** 로만 표시함)과 일본 내 호텔리조트 법인인 Solare Hotels and Resorts K.K.(이하 “Solare” 로만 표시함)를 포함한 비금융 계열회사의 자산 합계액이 은행법 소정의 비금융주력자 요건인 한화 기준 금 2조원을 넘어 **금 2.8조원**에 이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모회사	일본 내 비금융 자회사	자산총액 (백만엔)	자산총액 (백만원)*
LSF Continental Holdings SCA	Ninomiya Co, Ltd	2,070	16,184
	Pacific Golf Group International Holdings KK	224,017	1,751,432
LSF EA Holdings SCA	Gashu Enterprise Co, Ltd.	121,272	948,141
LSF SHR Holdings SCA	Solare Hotels and Resorts K.K.	17,112	133,787
일본내 비금융 계열회사 자산 합계		364,471	2,849,544

- 2008. 9. 9. 론스타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발췌. *: 1¥= 7.8183 원 (2006. 12. 29 기준 환율)

그럼에도 금융감독당국은 그 동안 KBS가 2011. 5. 25.경 LSF(론스타)의 비금융 계열회사인 일본 내 골프장 법인(PGM)의 존재를 보도하기 전까지 이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기존고발사건에서 피고발인들은 각하 결정을 받았으나, 이는 모두 거짓임이 명백히 밝혀졌다. 즉, 금융감독당국이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전대미문(前代未聞)

2) 당초 일본내 골프장법인인 Pacific Golf Management가 론스타펀드 III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이 회사는 2004. 설립된 Pacific Golf Group International Holdings KK(이 법인은 2011. 7.경 Pacific Golf Management Holdings KK로 변경되었고, 본 고발장에서는 PGM으로만 명기하고 있음)의 자회사가 됨. 양자를 구별하기 위해 2001년 설립된 Pacific Golf Management를 PGM자회사로 표현함.

聞)의 사건임이 드러난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의해, 당시 금융위원장, 부위원장 및 은행과장 등의 각 지위에 있는 자들이 적어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비금융주력자 관련 반기적격성 내지 수시적격성 심사 에 관한 직무를 유기했음이 명백히 인정되고, 특히 김석동, 권혁세, 성대규는 직무유기 혐의 이외에 2011. 3. 16. 및 2012. 1. 17. LSF(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 당시 금융감독원 및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비금융주력자를 금융주력자로 보고하도록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권리행사방해)한 혐의도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발인의 범죄행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드러났으니 이들에 대한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2. 범죄혐의사실

가. 직무유기의 점

(1) 진동수, 이해선, 최훈, 김근익의 직무유기의 점

진동수는 2009. 1. 20.부터 2011. 1. 2.까지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이해선은 2008. 3. 11.부터 2009. 1. 20.까지, 최훈은 2009. 1. 21.부터 2010. 2. 18.까지, 김근익은 2010. 2. 19.부터 2011. 1. 31.까지 각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으로 재직하면서, LSF(론스타)에 대해 은행법 16조의4 소정의 비금융주력자 관련 한도초과보유주주 반기적격성 심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수행하지 않아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본건 공개자료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의 위 관련자들은 2007. 7. 10. 기준으로 또는 적어도 2008. 9. 9. 기준으로 PGM과 Solare로 인해 LSF가 비금융주력자임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따라서 위 관련자들은 이 시점에 LSF(론스타)에 대한 반기적격성 심사 내지 수시적격성 심사를 한 후 은행법 제16조의4 제3항 소정의 초과보유조건충족 명령 및 제5항에 의한 주식처분 명령 등을 내렸어야 한다.

그러나 위 관련자들은 LSF(론스타)의 비금융 계열회사인 PGM과 Solare 등으로 인해 LSF(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임을 위 시점에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2008.부터 2010. 12.까지 비금

융주력자 심사 관련 직무 수행을 의식적으로 포기하거나 방임하였고, 이로써 국가의 금융감독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하였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취지).

기존고발사건에서는 진동수, 이해선, 최훈 및 김근익을 고발하지 않았으나, 본건 공개자료에 의해 이들의 직무유기 혐의가 명백히 드러남에 따라 이들을 새롭게 고발하게 된 것이다.

(2) 김석동, 권혁세, 성대규의 직무유기의 점

김석동은 2011. 1. 3.부터 2013. 2. 24.까지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권혁세는 2009. 11. 17.부터 2013. 3.까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으로, 성대규는 2011. 2.1.부터 2012. 2. 16.까지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으로 각 있으면서, 론스타에 대해 은행법 제16조의4 소정의 반기적격성 심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 직무를 고의적으로 유기하였다.

특히, 이들은 시민단체 및 언론의 요구에 떠밀려 2011. 3. 16.경 7분기(2007. 6.말 기준부터 2010. 6.말 기준일까지)에 걸친 LSF(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일시에 함에 있어서도 PGM과 Solare 등 LSF(론스타)의 비금융 계열회사로 인해 LSF(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임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채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처럼 심사하여 적법한 직무 수행을 의식적으로 포기하였고, 이로써 국가의 금융감독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하였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취지).

또한 이들은 2011. 5. 25. KBS보도로 인해 PGM의 실체가 일반인에게 알려진 이후에도 LSF(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일부러 늦추다가 론스타 펀드 IV³⁾가 2011. 12. PGM을 매각하자 Solare 등 LSF(론스타)의 다른 비금융 계열회사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채 비로소 2012. 1. 27. LSF(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함으로써 적법한 직무 수행을 의식적으로 포기하였고, 이로써 국가의 금융감독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하였다.

3) 2003년 한국외환은행 인수 당시 인수주체로 신고된 (1) Lone Star Partners IV L.P., (2) Lone Star Fund IV(US) 및 (3) LSF와 (4) 그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는 자를 포괄하는 개념임.

위와 같이 위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명백히 소명됨에도, 기존고발사건에서 관련자들의 허위진술과 증거은닉으로 인해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즉, 위 관련자들이 소속된 금융위원회는 직접 또는 금융감독원을 지시하여 비금융주력자 관련 자료의 조사 및 심사 업무를 수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음에도, 관련자들은 기존고발 사건에서 금융감독원이 보고한 자료를 토대로 금융위원회에서 이를 단순히 결의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변소를 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으나,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주도적으로 자료조사를 하여 2007. 7. 10.경(늦어도 2008. 9. 9.경) LSF(론스타)의 비금융 계열회사인 PGM과 Solare 등으로 인해 LSF(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임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금융위원회 소속 위 관련자들이 검찰조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의도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김석동, 권혁세 및 성대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김석동, 권혁세, 성대규는 시민단체의 거듭된 요구에 떠밀려 금융위원회가 2011. 3. 16.경 2007. 6.말부터 2010. 6.말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7분기에 걸친 반기적격성 심사를 한꺼번에 하는 과정에서 각 위원장, 부위원장 및 은행과장의 지위에서 2007. 7. 10. 및 2008. 9. 9. 확인된 PGM과 Solare 등 LSF(론스타)의 비금융 계열회사로 인해 LSF(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금융감독원 및 그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이 LSF(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처럼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금융감독원 및 그 직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석동은 금융위원장, 성대규는 은행과장, 권혁세는 금융감독원장의 각 지위에서 금융위원회가 2012. 1. 27.경 2011.말 기준으로 LSF(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할 당시에도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론스타펀드 IV가 PGM을 매각할 시간을 부여하도록 함과 동시에 2011. 12.말 현재 LSF(론스타)의 비금융계열회사인 Solare 등을 심사 대상에서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보고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금융감독원 및 그 소속 직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기존고발사건의 불기소이유를 보면, 검찰은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보고를 받아 위와 같이 LSF(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고 심사하였으므로 금융위원회 소속 피고발인에 대

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 공개자료에 의해, 금융위원회 소속 위 관련자들이 LSF(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임을 인정할 자료를 미리 확인하였음이 밝혀졌는바, 그렇다면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는 금융위원회 소속 관련자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LSF(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처럼 보고하도록 강제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3. 결 론

위 금융감독당국자들은 론스타로부터 비금융주력자임을 자인하는 서류를 제출받고서도 이를 고의적으로 은닉한 채 론스타에게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는 판정을 해줌으로써 론스타의 외환은행 보유를 도와 수조원의 이익을 유출시키고 나아가 수조원의 투자자-국가제소를 당하는 매국적인 행위를 자행하였다. 금융감독당국이 아니라 금융조작당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 더러운 범죄행각에 할 말을 잃는다. 검찰이 또 다시 이 더러운 범죄행각의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면죄부를 줄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검찰이 정의의 칼로 부정부패를 일소하기는커녕 반대로 정의를 베어버리는 망나니의 행동을 더 이상 하지 말기를 바랄 뿐이다.

론스타 사건

대주주적격성심사 2차 정보공개자료로 드러난 형사책임 저야 할 금융관료들

참여연대
2014-03-13

 진동수 금융위원장 2009. 1. 20 ~ 2011. 1. 2	직무유기	2008. 9.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사실이 드러난 이후 금융위원장 재임 기간 동안 내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이해선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 은행감독과장 /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장 2007. 3. 13 ~ 2009. 1. 20	직무유기	2007.7~2008.12.24.까지 김앤장 및 론스타와 수차례 공문 교환하여 론스타의 해외계열사 존재 및 비금융회사 내역 직접 파악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최훈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2009. 1. 21 ~ 2010. 2. 18	직무유기	이해선 은행과장의 후임으로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수행하지 않음 이해선 은행과장으로부터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자료를 인수받았음에도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김근익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2010. 2. 19 ~ 2011. 1. 31	직무유기	최훈 은행과장의 후임으로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수행하지 않음 최훈 은행과장으로부터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자료를 인수받았음에도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김석동 금융위원장 2011. 1. 3 ~ 2013. 2. 24	직무유기 직권남용	2011. 3. 16 대주주적격성 심사 당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도 면죄부 부여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인 것을 알고도 금융감독원의 허위 부실 보고를 묵인 또는 강요
 권혁세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 2007. 3. 26 ~ 2008. 1. 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09. 11. 17 ~ 2011. 3. 26	직무유기 직권남용	2011. 3. 16 대주주적격성 심사 당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도 면죄부 부여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인 것을 알고도 금융감독원의 허위 부실 보고를 묵인 또는 강요 이해선 은행감독과장의 직속 상관인 감독정책1국장으로서 근무 당시 론스타가 일련에 골프장, 호텔 등 비금융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자료 제출받음
 성대규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2011. 2. 1 ~ 2012. 2. 16	직무유기 직권남용	2011. 3. 16 대주주적격성 심사 당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도 면죄부 부여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인 것을 알고도 금융감독원의 허위 부실 보고를 묵인 또는 강요

론스타 적격성 심사가 ISD에 미치는 영향 및 중재요건과 절차

.....

김 행 선 미국변호사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론스타 적격성 심사가 ISD에 미치는 영향 및 중재요건과 절차

김 행 선 미국변호사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I. 서론

2013. 12. 26. 대법원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인지 여부를 판명할 수 있는 제2차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그 결과 론스타가 Pacific Golf Group International Holdings(이하 “PGH”라 함)와 일본내 호텔리조트 법인인 Solare Hotels and Resorts K.K.(이하 “Solare”라 함)를 포함한 비금융계열 회사의 자산 합계액이 은행법 소정의 비금융주력자 요건인 한화 기준 금 2조원을 넘어 금 2.8조원에 달해 국내법상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운영이 위법하였음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현재 론스타가 우리나라와 벨기에간의 양자간 무역협정(이하 “한-벨 BIT”라 함) 제8조에 의거해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중재(이하 “ISD”라 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와 더불어 론스타가 제기한 ISD가 ICSID중재법상의 각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향후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II. ISD 관할요건 및 충족여부

ISD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 투자자가 협약에 의해 보호되는 **투자자적격**을 가지고 있을 것, 즉 당사자가 투자유치국이 아닌 다른 체약국 국민이어야 하고, 2) 당사자 일방이 **협약 당사국**이어야 하며, 만약 이 협약 당사국(투자유치국)의 구성조직 혹은 기관이 계약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투자유치국이 중재제기 합의와 관련하여 허가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3) 당사자가 **중재에 합의/동의를** 하였을 것 4) 당사자간의 분쟁이 **투자로부터 직접 파생한 법적 분쟁**일 것, 5) 투자자가 투자유치국내에 생산설비나 지점, 자회사 설치 등 **투자**로 인한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을 것, 6) 투자유치국의 **새로운 입법이나 규제**가 투자에 영향을 줄 것을 요한다.

이를 세분하면 ‘대인관할권’과 ‘대물관할권’으로 나뉘는 바, 위 1)항부터 3)항까지의 사항이 전자에 해당하고, 위 4)항부터 6)항까지의 사항이 후자에 해당한다. 이러한 관할권 존재 여부가 ICSID 쟁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논점이며, ICISID 중재판정의 대부분이 이에 대한 판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할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물관할 요건

(a) 법적 성격의 분쟁

우선 ‘분쟁’은 최소한도의 의사교환(예: 일방의 요구에 대한 타방의 거부 또는 무응답 등, *AAPL v. Sri Lanka*)을 전제로 하며, 분쟁을 둘러싸고 당사자간 직접적인 이해관계(소의 이익)가 있어야 하며 분쟁의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분쟁은 형평법상의 권리·의무나 사실문제에 그치지 않고 법적 권리·의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중재제기규칙 제2조 제1항(e)에서는 이러한 분쟁의 법적 성격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분쟁이 비록 정치적 성격 또는 정부행위의 성격(예: 국유화 조치로 인한 법인강제해산 등, *Benvenuti & Bonfant v. Congo*)을 갖는다고 해도 법적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경우 ICISID 중재의 대상이 된다.

※ 론스타는 중재의향서에서 금융감독원 등 한국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행태로 인하여 론스타의 외환은행 투자회수 능력에 실질적이고 중대한 제한을 가하였고, 양자간 조세조약에 위반하여 자의적이고 모순된 세금도 부과하였다고 주장한 바, 일응 론스타란 대주주의 투자자본 회수능력이란 법적 권리와 세금납부라는 법적 의무에 대한 분쟁이라 할 수 있어 이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b) 투자와 분쟁의 직접 관련성

투자과 분쟁의 직접관련성은 투자와 관련해서 자금융자, 임대, 물품구매, 제품 판매, 면세 등 부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과 같이 ‘투자의 일반적 단일성’(*The general unity of an investment*)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특정거래가 전체적인 투자활동의 핵심적인 사항인 경우에도 투자의 직접관련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투자·인수하여 이를 운영·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므로 투자와 분쟁간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하겠다.

(c) 투자

ICSID협약은 투자의 정의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통상 ICISID 관할권을 발생시키는 투자계약이나 양자협정, 다자협정이 특정 유형의 거래를 보호대상 투자로 규정한 경우 그 거래유형이 ‘투자’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ICISID협약상 ‘투자’에 속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를 구비하여야 한다.

- 1) 지속성: 사업이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가져서 당사자들간에 장기적인 관계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대부금 연장이나 채권 구매는 투자로 분류되나 (*Fedex v. Venezuela, CSOB v. Slovakia*), 단순한 물품구매 혹은 단기 상업신용 등과 같은 단발적인 거래는 투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 2) 규칙적인 수익구조: 실제 수익을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 3) 위험부담: 투자는 어느 정도 위험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없는 거래는 투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 4) 의무부담: 당사자들이 실질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특히 이 문제는 투자협정에 Umbrella Clause (일방 계약국이 계약상대국 투자자에 대해 준수해야 하는 투자의무 규정)가 있고 이와 별도로 투자유치국과 투자자간 투자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 투자협정위반 (Breach of umbrella clause) 뿐만 아니라 투자계약 위반(계약의무 불이행: Breach of contractual obligation)에도 ICISID 관할권이 인정된다. 투자계약위반 역시 당해 Umbrella Clause로 인하여 협정의무 위반(breach of treaty-based obligations)으로 되어 ICISID 중재의 관할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 5) 투자의 중요성/기여도: 해당 사업이 투자유치국의 경제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여야 한다(*Patric Mitchell v. DRC*). 때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그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가 ‘중요하고 긍정적’(Significant and positive: 중요성 요건)일 것이 요구되기도 한다. (*MHS v. Malaysia*, May 17, 2007)

6) 투자의 적법유효성 및 신의성실성: 또한 이러한 투자는 투자유치국의 법규를 준수한 ‘적법하고 유효한 투자’일 것(MHS v. Malaysia, May 17, 2007)이 요구되며, 그러한 자산의 투자는 ‘신의성실’(bona fide investment)일 것이 요구된다. 투자는 원칙적으로 신의성실하지 않다는 전제가 인정되므로 투자자에게 신의성실한 투자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7) 보호대상 투자/투자의 적격성(Qualified investment): 투자는 투자유치국과 투자자가 속한 국가간에 체결한 투자협정에서 보호되는 투자(covered or qualified investment)일 것을 요한다. 당해 투자가 보호대상 투자인지 여부는 적용되는 협정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는 바, 당해 협정이 명시적으로 보호대상 투자로 규정한 ‘Opt-in 방식’ 또는 전체를 보호대상 투자로 규정한 후 일정 예외규정을 두는 ‘Opt-out 방식’이 있다.

※ 론스타의 경우, 위 요건 중 1)~4)의 요건 및 7)의 요건은 충족하나, 5)~6)의 요건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우선 5)의 요건을 살펴보면, 론스타의 투자(외환은행의 인수 및 운영)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중요하고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느냐 하는 질문엔 선뜻 그렇다라고 긍정하기 힘들다. 우선 경제발전에 기여하였는지 자체도 의문이거니와 설사 경제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여가 중요하고 긍정적(플러스적 효과를 가져왔느냐 여부)이었느냐는 오히려 반대의 의견이 높다고 하겠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시부터 국부유출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그 운영과정에서도 외국인 주주에 대한 과도한 배당금 등으로 인수 2~3년 만에 투자금을 전액 회수하는 등 엄청난 이득을 챙겼으며, 매각과정에서는 비금융사업자로서 징벌적 매각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음에도 오히려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대주주 프리미엄까지 인정받아 매각하는 등으로 오히려 한국경제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6)의 요건을 살펴보면,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법규를 준수한 ‘적법하고 유효한 투자’를 신의성실하게 하였을 것을 요하는 바, 론스타의 경우는 이번 정보공개 결과 우리나라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여 외환은행의 인수와 운영을 할 수 없는 비적격 투자자로 결과적으로 그 인수와 운영이 위법하였음이 판명된 바, 적법한 투자라고 볼 수 없고, 론스타가 PGH와 Solare 등 비금융사업을 소유·운영한 사실을 은닉하는 등으로 신의성실하게 투자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겠다.

(d) 투자유치국과의 직접적 이해관련성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에 생산설비나 지점, 자회사 등의 일정한 투자(실질적 의무 부담)가 있을 것을 요한다. 즉,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내에 상당한 투자적 이해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 론스타는 우리나라에 그 지점을 두고 다양한 투자활동을 하였으므로 이 요건은 충족된다고 하겠다.

(e) 투자유치국의 입법이나 규제에 의한 피해

국제투자중재의 관할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투자유치국의 새로운 입법이나 규제, 법적용이 투자에 부정적 영향(Negative influence), 즉 피해/손해를 입히거나 입힐 것이 예상될 것을 요한다.

※ 론스타의 경우, 우리나라의 은행법을 제대로 적용하였다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적법하게 인수·운영할 수도 없었고, 그에 따라 강제매각 등 아무런 제제도 없이 매각승인을 하지 않았을 것인 바, 론스타가 우리나라의 법규와 법적용으로 인하여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금융감독원 등의 비호와 특혜로 많은 이득을 챙길 수 있었으므로 이 요건 역시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겠다.

2. 대인관할 요건

(a) 계약당사국

ICSID절차의 각 당사국은 ICSID절차를 개시하는 일자에 ICSID협약의 당사국이어야 한다. 양자무역협정의 당사국이 ICSID협약 당사국이 아닌 상태에서 ICSID에 중재를 제기하기로 하는 규정을 둘 수 있으나, 이 규정 역시 양자무역협정의 당사국이 ICSID협약 당사국이 될 때까지는 효력이 없다.

※ 론스타는 6개의 벨기에 국적의 투자자 명의로 ‘한-벨BIT’에 의거하여 ISD를 제기하였으므로 일응 이 요건은 충족된다고 하겠다.

(b) 국가의 구성하부조직/기관의 동의 및 이에 대한 투자유치국의 승인

투자계약의 당사자가 국가가 아닌 국가의 구성하부조직(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영토적 실체) 또는 기관(국가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체), 즉, 국영기업, 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인 경우에, ICSID중재 관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구성하부조직 또는 기관이 투자계약내 ICSID중재조항 삽입 등의 방법으로 ICSID중재 관할에 동의하고, 협약당사국이 구성하부조직 또는 기관을 지정하고 이 사항을 ICSID에 통지해야 한다(협약 제25조 1항). 이러한 협약 당사국의 지정은 지정된 조직체가 구성하부조직 또는 기관이라는 강한 추정효과를 갖게 되나, 관할권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협약 제41조에 따라서 당해 분쟁의 중재판정부가 된다. 또한 이러한 지정철회는 가능하나, 기존의 관할권 동意的 일방적 철회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구성하부조직 또는 기관이 관할권에 동의한 후 지정이 철회되더라도 관할권 동意的는 여전히 유효하게 된다.

(c) 분쟁 당사자의 ICSID 관할권에 대한 동의

ICSID협약 제25조 제1항 및 ICSID 추가절차규칙(Additional Facility Rules) 제4조 제2항은 ICSID가 중재관할을 갖기 위해서는 ‘분쟁당사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고, 「뉴욕협약(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제2조는 ‘동 협약에 따라 중재판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중재합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ICSID중재의 관할권이 생기기 위해서는 분쟁당사국의 동意的가 필수적이다. 즉, 피소국가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투자자는 분쟁을 ICSID중재로 다룰 수 없다.

이러한 ICSID제소에 대한 동意的는 개별 투자마다 사후 동意的하는 방식, 특정 투자 또는 투자협정상의 모든 투자에 대해서 사전 동意的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ICSID중재에 있어서 동意的가 있는가의 여부는 ICSID중재관할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동意的방식 중 개별적·사후적 동意的는 투자자보호에 충분치 못하다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에 당사국의 일괄적 동意的조항을 BIT등 투자협정에 포함시킴으로써 동意的가 없어 ICSID중재로 다투지 못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식이 이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적·일괄적 동意的조항이 있는 BIT의 경우에도 BIT상의 동意的는 ‘당사국들’의 동意的에 불과하고

ICSID협약상의 ‘분쟁당사국’의 동意的가 아니므로 ICSID중재관할이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등지에서는 이보다 더 나아가 아예 협정 체결만으로 동意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무조건적인 사전동의 조항’을 포함시켜 가장 강력한 투자자보호를 하고 있다.

※ 한-벨BIT는 한미FTA와 달리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자동적으로 동意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무조건적인 사전 동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 동意的의 규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ICSID협약 제25조에 의거하여 론스타가 제기한 ISD에 대하여 그 ‘분쟁당사국’으로써 중재에 대하여 동意的하지 않아야 하며, 이에 따라 론스타가 제기한 ISD는 대한민국에 관할권이 없다고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다.

(d) 투자자의 국적

투자자는 투자유치국의 국민이 아닌 다른 체약국의 국민이어야 한다. 국민에는 자연인인 개인투자자, 개인소유회사 또는 법인 등이 포함된다. 회사 또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전체 혹은 일부가 정부소유인지 여부는 상관이 없으나 해당 법인 전체 혹은 일부가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체약국 국민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일례로 *CSOB v. Slovakia* 사건에서 슬로바키아 정부는 신청인이 체코정부의 국가기관이므로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당해 기관의 행위의 성격이 국제금융 관련 거래행위, 민영화 등 상업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체약국의 국민’으로 인정되었다.

자연인의 국적에 관해서는 각 해당국의 국내법으로 결정하며, 조약상 권리를 영주권자에게 확대시켜 인정하는 경우에도 ICSID협약상의 체약국 국민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의 국적은 보통 법인설립지 또는 등록사무소 소재지로 결정하나 간혹 실질적 이해관계, 즉 지배기준(Control test)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다. 복수의 국적을 갖는 경우에는 이중 최소 하나가 체약국이면 된다. 이러한 국적 요건은 관할권 동意的일(법인인 경우) 또는 중재요청서의 등록일자(자연인인 경우), 중재신청일(외국지배 법인인 경우)에만 충족시키면 되고, 이후에 국적이 변경이 되어도 관할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투자유치국의 법인이라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들이 체약국의 국민(외국지배 법인)

으로 간주하기로 합의(명시적·묵시적 합의 포함)한 경우에는 협약 제25조 제2항 (b)상의 ‘외국지배’가 인정되어 체약국의 국민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외국지배가 인정되려면 i) 회사에 대한 객관적인 외국지배의 사실 ii) 투자유치국이 이러한 객관적 사실을 인정한 점, iii) 유효한 ICSID 관할권 동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외국지배는 객관적 요건이므로 실제 외국지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중재판정부가 직접 조사·판단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합의 또는 추정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외국지배를 결정하는 요소는 자본출자금/지분 크기, 의결권 여부, 의사결정 절차, 경영권 행사 여부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회사지분의 분포, 즉 ‘대주주의 국적’인 바, *Vacuum Salt v. Ghanatkrjs*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그리스가 회사주식의 20%만 보유하고 있고 80%는 가나가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동 회사는 체약국인 그리스 회사가 아니라 투자유치국인 가나의 지배하에 있는 법인으로 보아 관할권을 부인하였다.

※ 론스타는 한-벨BIT 제8조의 ISD규정에 근거하여 6개의 벨기에 투자자를 대신하여 ‘Lone Star Investment Management SPRL’(이하 “LSIM”이라 함)의 명의로 중재를 제기한 바, 과연 론스타가 다른 체약국의 국민, 즉 벨기에 국적의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론스타가 제출한 중재의향서상 LSIM사는 일응 벨기에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벨기에 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6개의 벨기에 투자자가 기재되어 있고, 이 투자자들이 외환은행 지분의 64.2%를 소유하였다고 기재함으로써, 일응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중재의향서상 기재되어 있는 6개의 벨기에 투자자 명단을 보면, ‘LSF-KEB Holdings SCA’, ‘STAR Holdings SCA’, ‘HL Holdings SCA’, ‘LSF SLF Holdings SCA’, ‘극동 Holdings I SCA’, ‘극동 Holdings II SAC’로 그 실체가 론스타가 한국내에서 소유·운영한 회사들로 보이고, 과연 이 법인이 실제 운영·활동하는 실체가 있는 법인이 아니라 페이퍼 컴퍼니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만약 이 6개 법인의 실체가 한국에 주소지를 둔 법인으로 벨기에 법인이 아니라고 할 경우에는 협약 제25조 제2항 (b)상의 ‘외국지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의 국적이 어디냐에 따라 한-벨BIT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판명된다.

이러한 손쉬운 페이퍼 컴퍼니의 설립을 통해 특정BIT를 적용받아 우회적으로 ISD를 편법 제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BIT나 FTA규정에 페이퍼 컴퍼니

는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두기도 하나, 아쉽게도 한-벨BIT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분명치 않다.

III. 중재절차 및 결정

1. 중재절차

- 1) 중재제기요청서 제출
- 2) 중재판정부 설치
- 3) 관할권 심사
- 4) 중재 심리
 - i) 중재절차 적용순위: 협약의 강행규정→행정재정규정 및 중재제기규칙→당사자 합의절차→협약 임의규정→중재절차규칙→절차에 관한 중재판정부 결정
 - ii) 서면절차: 중재제기요청 및 요청사실의 통보, 당사자의 주장 (Pleading: 사실관계, 법률관계, 청구사항)
 - iii) 구술절차: 중재판정부의 심리(Hearing), 각 당사자의 의견 개진, 당사자나 증인에 대한 중재인의 질문
 - iv) 추가자료 및 증거제출 요구
- 5) 중재결정: 잠정조치를 포함한 중재판정부의 결정

IV. 중재판정의 취소

1. 취소대상

중재판정만이 취소대상이 되며, 해석결정이나 재심결정은 취소대상이 되지 않는다. 모든 중재판정이 취소대상이 될 수 있으나, 화해합의를 기록한 중재판정의 취소는 그 취소사유가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또한 중재판정 전체뿐만 아니라 중재판정의 일부분에 대해서도 취소할 수 있다.

중재판정의 취소여부는 특별위원회에서 판단하나, 취소한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위

원회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새로이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판단하게 된다. 특별 위원회의 취소 결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구성된 중재판정부는 특별위원회의 판단에 구애 받지 않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2. 제한적 취소사유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는 협약 제52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에 한하여 인정되며, 취소신청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협약 제52조 제1항이 인정하는 취소사유로는 i) 결격사유 있는 중재인의 중재 등 중재판정부 구성의 하자, ii) 관할권의 결여, 관할범위 초과, 준거법의 비적용 등 명백한 월권, iii) 중재인의 부적절한 금품 수수 등 중재인의 부패, iv) 당사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 절차규칙(공정하고 평등한 대우, 충분하고 동등한 변론권의 부여, 중재인간 충분한 심의, 증거 및 사실의 입증원칙 등)의 심각한 위반, v) 판정이유 불기재 또는 불충분하거나 부적합한 이유의 기재가 있다.

IV.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1.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확정된 중재판정은 당사자를 구속하는 기관력을 가지며, ICSID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이러한 중재판정을 승인, 집행할 의무를 진다. 중재판정 중 금전지급의무 부분만이 집행대상이 되는 바, 집행은 협약 제54조 제3항에 의해 집행이 청구된 국가의 법률에 따라 행해진다. 집행법원은 단순히 중재판정의 진정여부만 확인하여 집행할 권한만 부여될 뿐, 분쟁의 본안이나 중재절차의 공정성 및 적절성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

2. 주권면책

협약 제54조 제3항은 중재판정의 집행이 신청된 국가의 법이 집행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선 국가면책/주권면책 조항도 포함된다. 또한 협약 제55조는 “제54조의 어느 규정도 그 국가 또는 외국에 대한 집행면제와 관련해서 체

약국에서 유효한 법률을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집행이 신청된 국가의 법률이 정부기관 또는 일정 정부기능에 대하여 국가면책 또는 주권면책을 인정한 경우에는 확정된 중재판정을 이유로 집행할 수 없다. 결국 ICSID 중재판정의 집행여부와 그 정도는 집행법원이 적용하는 국내법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주권면책 또는 국가면책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집행국의 국내법이 동 주권면제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협약 제55조는 집행면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면책은 승인된 ICSID 중재판정의 기관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이 신청된 국가의 국내법상 국가면책 주장을 집행법원이 수용하였어도 중재판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국제법 위반(협약 제27조 제1항의 외교보호권 발동,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사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통 집행면제의 기준은 집행대상이 되는 재산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국가면책을 다루는 국내 법령은 상업용 재산과 비상업용 재산을 구분하여, 상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집행조치를 허용하지만, 정부목적 또는 기능에 사용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집행조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투자자가 위와 같은 집행면제를 피하고자 할 경우에는 투자협정을 체결할 때 집행면제권의 포기를 규정하기도 한다.

국가면책이 인정되어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에도 투자자의 원 국적국가가 직접 이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 등에 제소 등의 방법을 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외교적, 경제적 압력을 가하는 등의 간접적인 압력을 통하여 사실상 국가면책조항을 무력화시키거나 이를 외교·통상마찰을 우려한 우리 정부가 국가면책권을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중재판정 및 집행에 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다.

신규 증거가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주대표소송에 미치는 영향

.....

김 성 진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부소장)

론스타 적격성 심사가 ISD에 미치는 영향 및 중재요건과 절차

김 성 진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부소장)

1.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주대표소송의 개요

(1) 사건의 진행 개요

2003. 9. 2.	론스타등의 동일인 한도초과 보유신청 (구은행법 제15조 제3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나, 제16조의2 제1항 위반임)
2003. 9. 26.	금융감독당국 승인 ① 비금융주력자 해당여부 심사 불이행. (구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 위반) ② 피고 론스타 파트너스 포 엘피의 동일인 중 누락된 특수관계인 일부는 다음과 같음. - KC Holdings S.A. (극동건설 모회사) - 스타타워 주식회사 및 Star Holdings S.A. - U.S. Restaurant Properties, Inc.
2003. 10. 29.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관련 변경보고 이른바 ‘투자자 변경’ ; 특수관계인의 변동으로 인하여 동일인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에 대한 별도의 심사 부존재. 비금융주력자 해당여부 심사 불이행.
2003. 10. 30.	피고 론스타등 주식 매매 및 인수대금 납입

2003. 10. 31.	외환은행 신주발행 및 등기
2007. 3. 31.	주주총회에서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가 피고 엘에스에프와 피고 론스타등의 비금융주력자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이후 공식 서면 질의 그러나 이러한 이의 제기가 있었음에도 배당강행
2007. 3. 29.	이러한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좌측 표 각 날짜에 각 이익 배당 합계 1조 7,099억 원
2008. 3. 28.	
2009. 3. 31.	
2010. 3. 30.	
2010. 8. 4.	
2010. 11. 9.	
2011. 3. 31.	
2011. 5. 25.	KBS 론스타 일본 골프장 법인 (PGM Holdings) 보도
2011. 7. 1.	위 보도에 따라 피고 엘에스에프 및 피고 론스타등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종전이사들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익 배당
2011. 11. 18.	금융위원회는 비금융주력자 심사 없이 주가조작에 기해 단순 매각명령(10% 초과분)
2012. 2. 9.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의 론스타 지분 모두 인수

(2) 주주대표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2849)의 청구원인

-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자신이 신고한 동일인 목록에는 일부러 빠뜨린 4 개 회사(KC Holdings S.A. (극동건설 모회사), 스타타워 주식회사 및 Star Holdings S.A., U.S. Restaurant Properties, Inc.)까지 합하면 자산기준으로 2 조원이 넘어 비금융주력자로서 은행법상 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자였음을 입증하여, 론스타의 외환은행인수 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함.
- 투자자변경 시에도 동일인에 변동이 있으므로 은행법위반 여부를 그때마다 판단받아야 함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승인이 없었음. 이 때문에 주식인수계약은 무효임도 주장함.
-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무효가 되면, 외환은행이 발행한 신주를 인수할 자격이 없는 것이 됨. 외환은행의 주주가 될 수 없는 자가 외환은행 신주 41%를 인수하여 하나금융지주회사에 매각함으로써 취득한 매각차액 2 조 1,231 억원은 외환은행에 반환하여야 함.
- 론스타가 불법적으로 지배하면서, 41% 지분에 대하여 8 회에 걸쳐 배당받아 간 배당액 합계 1 조 3,249 억 원도 반환하여야 함.
- 합계 3조 3,480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2. 신규증거의 의미

(1) 신규증거의 내용

- 론스타는 2007. 7. 10 일 제출한 대주주 적격성의 추가 보완자료에서 다음 사항을 스스로 시인함

① 론스타 펀드 1 호부터 5 호까지는 모두 동일인임.

② 론스타 펀드는 일본에 자회사로 호텔, 골프장 등을 가지고 있음.

- 론스타는 론스타 펀드 IV 특수관계인의 해외투자 사실 등에 관한 자료를 2008. 9. 9 일자(접수일 기준)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함.
- 론스타는 스스로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자료에 의할 때 2006 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은행법에 의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함.
- 금융위는 이를 은폐하고 2011.3.16. “적격” 결론.

(2) 주주대표소송에서 증거의 의미

- 주주대표소송에서는 론스타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동일인 목록에는 일부러 빠뜨린 4 개 회사(KC Holdings S.A.(극동건설 모회사), 스타타워 주식회사 및 Star Holdings S.A., U.S. Restaurant Properties, Inc.) 모두가 동일인에 해당된다는 것이 입증에서 중요한 포인트였음.
- 이미 제출한 증거를 통해 론스타가 누락한 회사들 중에는 비록 직접 론스타펀드 4 호에는 속하지 않지만, 론스타펀드 3 호의 지배를 받으므로, 전체적으로 론스타의 지배를 받는 동일인이라는 것에 대하여 상당 정도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있음
- 이번 신규증거에 의하면, 론스타 펀드 1 호부터 5 호까지는 모두 동일인임을 인정하고 있어, 이러한 입증을 보다 강화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최소한 2006 년말 당시에는 비금융주력자임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시점 이후에 외환은행으로부터 가져가 배당금은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임.

토 론 문

론스타 대주주적격성 관련 정보공개 자료가 론스타 관련 헌법소원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

김 득 의 집행위원장 (론스타공대위,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론스타 대주주적격성 관련 정보공개 자료가 론스타 관련 헌법소원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김 득 의 집행위원장
(론스타공대위,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1. 론스타의 외환은행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등 위헌확인을 위한 헌법소원

2012. 7. 16. 민주당 김기준 의원 외 4인(외환은행 소액주주)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 결정은 청구인(소액주주)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참고자료] 1. 2012년 7월 위헌 확인 등 헌법소원심판 청구취지 등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 구 인 김기준 외 4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국)
피청구인 금융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김석동

청 구 취 지

1. 피청구인이 엘에스에프 케이이비 홀딩스 에스씨에이에 대해 구 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 및 동조 제2항에 의한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 승인 심사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03. 9. 26. 구 은행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의 동일인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을 한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2. 피청구인이 2011. 11. 18. 엘에스에프 케이이비 홀딩스 에스씨에이에 대한 은행법 제16조의4 제1항 및 제15조 제5항에 의한 적격성 심사에 기하여 별지목록 2 기재

주식 중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처분을 명함에 있어 엘에스에프 케이에비 홀딩스 에스씨에이가 경영권 프리미엄 등의 부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처분방법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처분을 명한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3. 피청구인이 2012. 1. 27.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인 엘에스에프 케이에비 홀딩스 에스씨에이에 대해 은행법 제16조의4 제1항 및 제15조의2 제6항에 따른 자격 및 승인의 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헌법 제23조 재산권

헌법 제11조 평등권

침해의 원인

1. 피청구인이 2003. 9. 26. 엘에스에프 케이에비 홀딩스 에스씨에이에 대해 구 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 및 동조 제2항에 의한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 승인 심사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구 은행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동일인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을 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일반주주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게 침해
2. 피청구인이 2011.11.18. 엘에스에프 케이에비 홀딩스 에스씨에이에 대한 은행법 제16조의4 제1항 및 제15조 제5항에 의한 적격성 심사에 기하여 처분방법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은행법 제16조의4 제5항에 따른 별지목록 기재 주식 중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처분을 명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일반주주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게 침해
3. 피청구인이 2012. 1. 27.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인 엘에스에프 케이에비 홀딩스 에스씨에이에 대해 은행법 제16조의4 제1항 및 제15조의2 제6항에 따른 자격 및 승인의 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일반주주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게 침해

론스타 관련한 헌법소원의 청구 취지는,

- △ 첫째, 2003년 외환은행 인수당시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시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 승인심사 의무위반.
- △ 둘째, 2011년 11월18일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확정으로 인한 의결권이 있는 10%를 초과하는 주식처분명령 시 론스타가 경영권 프리미엄 등의 부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처분방법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처분을 명한 사실.
- △ 셋째, 2012. 1. 27. 론스타의 외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해 은행법에 따른 자격 및 승인의 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실은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헌법 제23조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

위와 같은 내용을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의 청구목적은,

-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인수 당시부터 외환은행 매각 시점까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임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금융위원회는 이를 모두 무시하고 특혜적인 결정을 내렸음.
- 특히 PGM 홀딩스(일본 골프장)로 인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임이 명백히 밝혀지자 금융위는 론스타가 이를 매각하도록 한 후 비로소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음. 그러나 론스타가 PGM홀딩스를 매각한 시점을 기준으로도 그 계열회사인 솔라레 홀딩스 등을 고려하면 비금융주력자일 수 밖에 없음이 명백하였음.
- 이처럼 금융당국이 갖은 특혜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통한 한국 탈출을 도왔으나, 론스타는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 절차를 개시하였음.
 - 이는 금융위원회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인 론스타를 산업자본이 아닌 것처럼 둔갑시킨 데 비롯된 것으로 오로지 돈만 추구하는 투기자본의 속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임.
- 따라서 론스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바로잡아 줄 필요성이 매우 높고, 그래야만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ISD)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임.

위와 같은 목적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론스타의 산업자본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한 우리 정부가 론스타가 쳐 놓은 그 물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까 심히 우려하였고,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지배의 핵심이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 지배였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이런 시각에서 문제 해결의 단초를 찾는 것이 외환은행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도모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소송(ISD)에서도 승소가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식임을 추구하는 목적이었다.

[참고자료] 2. 론스타 관련 헌법소원 청구 기사(경제플러스, 2012. 7.16)

경제
금융

"론스타 관련 금융위 판단 잘못됐다" 헌법소원
김동욱 기자 | amor@epdaily.co.kr

승인 2012.07.16



▲ 사진 왼쪽부터 김득의 론스타공동대행위 집행위원장, 이대순 변호사(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민변), 김기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론스타 관련 금융위 판단 잘못됐다" 헌법소원(경제플러스, 2012. 7.16)

[경제플러스=김동욱 기자] 민변, 참여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민교협등 론스타 문제를 꾸준히 감시해온 국내 시민단체들과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2003년 9월 외환은행 인수 승인과 조건없는 매각명령, 금융주력자 판정이 위헌임을 확인하는 헌법소원을 16일 청구했다.

김 의원과 이들 단체는 헌법소원 청구에 앞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의 잘못된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바로 잡을때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ISD 제소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론스타는 명백한 비금융주력자로 은행을 소유할 수 없음에도 금융위가 이를 심사하지 않아 외환은행 주주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위가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하지 않고 론스타를 외환은행의 동일인 한도 초과보유 주주로 승인했다"면서 "주가조작에 관해서도 외환은행 초과지분을 징벌적 성격 없이 매각하라고 명령한 탓에 론스타가 경영권 프리미엄 등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론스타가 지난 5월 "외환은행 매각 과정이 부당하게 지체되고 매각 대금에 대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 제소를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며 현재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2. 론스타 산업자본 관련 정보공개 자료에 의한 헌법소원 취지 변경

론스타의 대주주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2차 정보공개 자료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2007. 7.10.부터 론스타의 비금융계열사의 존재(PGM, Solare등)를 알고 있었음에도 2011. 3. 16.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채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심사를 하였다.

아울러 2012. 1. 27.에도 PGM,이 매각될 때까지 심사를 일부러 늦추다가 Solare 등 비금융계열회사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채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심사를 하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론스타 관련 헌법소원 청구	
변경 前 청구취지	변경 後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엘에스에프 케이이비 홀딩스 에스씨에이에 대해 구 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 및 동조 제2항에 의한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 승인 심사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03. 9. 26. 구 은행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주식회사 한국의환은행의 동일인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을 한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2. 피청구인이 2011. 11. 18. 엘에스에프 케이이비 홀딩스 에스씨에이에 대한 은행법 제16조의4 제1항 및 제15조 제5항에 의한 적격성 심사에 기하여 별지목록 2 기재 주식 중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처분을 명함에 있어 엘에스에프 케이이비 홀딩스 에스씨에이가 경영권 프리미엄 등의 부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처분방법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처분을 명한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3. 피청구인이 2012. 1. 27. 주식회사 한국의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인 엘에스에프 케이이비 홀딩스 에스씨에이에 대해 은행법 제16조의4 제1항 및 제15조의2 제6항에 따른 자격 및 승인의 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1. 피청구인이 엘에스에프 케이이비 홀딩스 에스씨에이에 대해 구 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 및 동조 제2항에 의한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 승인 심사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03. 9. 26. 구 은행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동일인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을 한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2. 피청구인이 2011. 3. 16. 주식회사 한국의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인 엘에스에프 케이이비 홀딩스 에스씨에이에 대해 은행법 제16조의4 제1항 및 제15조의2 제6항에 따른 자격 및 승인의 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은행법 제2조 제1항에 제9호의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3. 피청구인이 2011. 11. 18. 엘에스에프 케이이비 홀딩스 에스씨에이에 대한 은행법 제16조의4 제1항 및 제15조 제5항에 의한 적격성 심사에 기하여 별지목록 기재 주식 중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처분을 명함에 있어 엘에스에프 케이이비 홀딩스 에스씨에이가 부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처분방법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처분을 명한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4. 피청구인이 2012. 1. 27. 주식회사 한국의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인 엘에스에프 케이이비 홀딩스 에스씨에이에 대해 은행법 제16조의4 제1항 및 제15조의2 제6항에 따른 자격 및 승인의 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기존의 청구취지에 추가하여 이번에 밝혀진 정보공개 자료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2011. 3. 16. 외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인 론스타에 대해 은행법 제16조의4 제1항 및 제15조의2 제6항에 따른 자격 및 승인의 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

여 ‘은행법 제2조 제1항에 제9호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위헌임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 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3. 헌법소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중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사 건 2012헌마634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기준 외 4인
피청구인 금융위원회

위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청구인들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자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대법원 2013. 12. 26.선고 2013두17503 판결)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7. 7. 10.부터 론스타의 비금융계열회사의 존재(PGM, Solare등)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2011. 3. 16.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채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하였고, 아울러 2012. 1. 27.에도 PGM이 매각될 때까지 심사를 일부러 늦추다가 Solare 등 비금융계열회사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채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하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일부 수정하여 제출하오니 조속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후 청구원인

1. 사건의 개요(새로 공개된 증거의 개요)

가. 청구인 기존 주장의 요지

청구인을 포함한 시민단체, 국회 및 한국외환은행 노동조합 등은 그 동안 (1) 피청구인이 2003년부터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합니다)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이하 편의상 “대주주”로도 표시합니다)인 엘에스에프 케이이비 홀딩스 에스씨에이(론스타-KEB Holdings SCA, 이하 ‘론스타’라고 약칭합니다)가 은행법 소정의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됨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고의로 하지 않았다는 점, (2) 시민단체의 압력에 떠밀려 피청구인이 2011. 3. 16. 비로소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할 당시에도 론스타의 비금융계열회사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심사한 점, (3) 특히 2011. 5. 25. KBS보도로 론스타의 비금융계열회사인 일본내 골프장법인 PGM Holdings KK가 일반에 공개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 회사에 대한 자산 조사를 핑계로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일부러 늦추면서 PGM Holdings KK를 매각할 시간을 벌어주다가 2011. 12.경 PGM Holdings KK의 매각이 완료된 직후 론스타의 다른 비금융계열회사(Solare 등)를 누락시킨 채 서둘러 2012. 1. 27.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종료함으로써 론스타의 이른바 “먹튀”를 도와준 점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엄중한 심판을 간청해 왔습니다.

나. 한국의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정보공개청구를 한 배경 및 밝혀진 사실

참여연대 및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는 2007. 3. 27.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피청구인 금융위원회에 론스타의 법적 실체 대해 질의하는 등 이에 대한 강도 높은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다가, 시민단체 요구에 떠밀려 비로소 2011. 3. 16. 심사를 할 당시에는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함이 없이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위 결정이 내려진지 불과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KBS가 그 동안 실체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론스타의 비금융계열회사인 PGM Holdings KK의 존재를 세상에 보도함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시민단체는 피청구인의 2011. 3. 16.자 결정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는 의구심을 강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본 심판청구서에도 자세히 언급하였듯이, PGM Holdings KK의 자산내역에 대해 일본 증권거래소에 공시된 자료를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이 가능함에도 피청구인은 이 회사에 대한 조사를 핑계를 이유로 무려 7개월 동안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피청구인은 론스타의 주가조작사건에 기한 주식처분명령을 내리기 전에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먼저 이행한 후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리라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요구를 무시한 채 갑자기 2011. 11. 18. 론스타에 대해 단순 주식매각명령을 내렸고, PGM Holdings KK가 2011. 12.경 매각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2012. 1. 27.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종료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론스타 봐주기’행태를 보면서, 청구인을 포함한 시민단체는 피청구인이 2003년경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임을 알면서도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을 내주었고, 이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임을 이유로 그 승인을 뒤늦게 취소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에 한국의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금융감독당국(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칭하여 사용)을 상대로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관련 자료 일체의 공개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 자료(이하 “본건 공개자료”라 합니다) 통해 금융감독당국이 적어도 2007. 7. 10. 경 론스타의 비금융계열회사인 PGM Holdings KK(이하에서는 PGM으로만 표현합니다) 및 Solare Hotel and Resort Co(이하에서는 Solare로만 표현합니다) 등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

면서도 그 존재를 숨긴 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고의로 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시민단체 요구에 떠밀려 2011. 3. 16.경 2007. 6.말 기준일부터 2010. 6.말 기준일까지 7분기에 걸친 반기적격성 심사를 일시에 하면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이미 그 존재를 알고 있었던 론스타의 비금융계열회사를 일부러 누락시키고 심사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각이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2011. 5. 25. KBS 보도 전까지는 PGM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 자산 조사를 핑계로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늦추었습니다만, 사실은 이미 그 존재를 알면서 론스타가 PGM을 매각할 때까지 심사를 고의로 늦추었던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도망갈 시간을 일부러 마련해 준 것으로 밖에 달리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3. 론스타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에서 법원은 론스타가 일정기간 산업자본 인정

[참고자료] 4.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처분 결정문 중

총 합계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766,178백만 원인데, 그 중 극동건설의 자산만 706,479백만 원에 달하였다. 위 극동건설은 2007. 6.경 주식회사 웅진홀딩스에 매각되었는데 극동건설의 연결계무제표를 기준으로 할 때 2005년 말의 자산은 약 481,719백만 원, 2006년도 자산은 약 543,736백만 원이다. 그렇다면 2005년과 2006년에 각 PGM의 자산과 국내 비금융회사 자산의 합산액은 각 2조 원을 초과함이 소명된다.

회계년도(연말 기준)	PGM의 자산 (단위 : 억 원)
2010	37,038
2009	34,910
2008	37,650
2007	20,790
2006	17,474
2005	18,414

따라서 2005년 내지 2010년에는 피신청인 엘에스에프의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 원 이상임이 소명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시기에 피신청인 엘에스에프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사건번호 2012카합496 의결권행사가처분) 결정문 중 12P-

지난 2012.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의 가처분결정(사건번호 2012카합496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에 있어서, 당시 법원은 소명이 일부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가처분 신청 자체는 기각했지만 은행법상 론스타는 일정기간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임을 인정하는 매우 중요한 판단을 내렸다.

(4) 따라서 피신청인 외환은행이 내세우는 입법취지, 형평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등은 피신청인 엘에스에프가 2005년 내지 2010년에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했음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사건번호 2012카합496 의결권행사가처분) 결정문 중 14P-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처분 결정문을 통해 “론스타가 적어도 2005년부터 일본 골프장을 매각하기 전인 2011년 12월초까지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였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외국자본에 대한 은행법 적용을 배제·완화하거나 신뢰보호를 이유로 론스타에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금융감독당국과 론스타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4. 결론

금융위원회는 최소한 2007. 7. 10.이후 론스타의 실체를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심사를 하지 않았다. 또한 시민단체의 요구에 떠밀려서 2011. 3. 16.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했으나, 이는 진실을 완전히 숨긴 채 진행되었다

론스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봐주기’는 2011. 5. 25. KBS보도로 PGM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급기야 금융위는 2011. 11.18. 아무런 제재 없이 주식매각명령을 내리고 PGM 매각을 기다렸다가 2012. 1. 27. 마지막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봐주기’를 마무리 지었다.

시민단체, 학계 및 대한민국 국회의 철저한 산업자본 심사요구에도 불구하고 론스타가 일본 내 골프장으로 인해 산업자본임이 명백하게 밝혀지자 이를 매각하도록 하고, 론스타가 골프장을 매각한 후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아니라는 기괴한 결정으로 '특혜'를 주었던 것이다.

이처럼 금융당국의 ‘봐주기’로 엄청난 이득을 얻고 대한민국을 떠난 론스타는 다시 금융당국을 배신하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론스타는 금융위원회의 2011. 11. 18. 주식매각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사실상¹⁾ 주식처분을 허용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금융위원회의 불법적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난다면, 론스타는 금융위원회와 공모하여 불법적 협력행위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 되므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ISD 자체가 성립될 수 없을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최소한 법원처럼 일정한 시기에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임을 다시 확인하여 인정하고, 이 과정에서 있었던 금융위원회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위헌으로 판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ISD관련 론스타 TF에서 최소한 론스타의 산업자본에 대한 봐주기를 한 모피아는 배제시켜야 한다.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길 수는 없다.

1) 사실상으로 표현한 것은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주식처분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매수자의 주식취득 승인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론스타의 주식처분을 허용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